

세법연구 13-07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2013.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범 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정 경 화 전문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11
1. 노후소득보장체계	11
2.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12
가. 공적연금제도	12
나. 퇴직연금제도	14
3.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21
가. 공적연금 과세제도	22
나. 퇴직연금 과세제도	25
III. 주요국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34
1. 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	34
가. 기대수명과 노인의 소득빈곤율	34
나. 노인 부양비율	36
다. 소득계층별 총연금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37
라. 공적, 의무가입 사적, 임의가입 사적 연금제도의 총소득대체율	39
마. 공적연금 기여율(public pension contribution rates)과 규모	42
바. 연금지출(pension-benefit expenditures): 공적 및 사적	44
2. 미국	46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46
나.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48
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54
3. 독일	65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65
나.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68
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79
4. 호주.....	83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83
나. 공적연금제도와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86
다. 강제가입 퇴직연금 과세제도.....	94
IV.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99
1. 국제비교.....	99
가. 공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99
나.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100
2. 시사점.....	106
가. 사용자 연금 부담금의 측면.....	107
나.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측면.....	108
다. IRP제도의 활용을 통한 연금자산 축적.....	110
라. 공적연금 부담금 보조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	111
참고문헌.....	114

표 목 차

〈표 II-1〉 퇴직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 개요	21
〈표 II-2〉 근로자 연금 부담금 과세처리	26
〈표 II-3〉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1
〈표 II-4〉 연금소득공제	31
〈표 II-5〉 연금 과세체계	33
〈표 III-1〉 OECD 국가의 소득계층별 총소득대체율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by earnings)	37
〈표 III-2〉 OECD 국가의 공적, 의무가입 사적, 임의가입 사적 연금제도의 총소득대체율	40
〈표 III-3〉 연금 유형별 OECD국가 비교	41
〈표 III-4〉 OECD 국가의 공적연금 기여율과 수입의 규모	43
〈표 III-5〉 OECD 국가의 연금급여지출: 공적 및 사적	45
〈표 III-6〉 미국 OASDI 보험료율 추이	49
〈표 III-7〉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 · 사용자 손금산입 한도	60
〈표 III-8〉 Traditional IRA 연금 부담금의 수정 조정 총소득별 소득공제 한도	61
〈표 III-9〉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율(2014년)	62
〈표 III-10〉 독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이(사무직 및 생산자 근로자 연금)	69
〈표 III-11〉 리스터연금제도의 보조금 및 보험료(2008년)	76
〈표 III-12〉 연도별 기타소득 과세비율	82
〈표 III-13〉 연도별 근로소득(연금) 소득공제비율	82
〈표 III-14〉 면세점과 개인소득세율(2014년)	83
〈표 III-15〉 호주의 퇴직연금 연혁	85

〈표 III-16〉 호주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87
〈표 III-17〉 호주의 노령연금 소득조사	88
〈표 III-18〉 호주의 노령연금 재산조사	89
〈표 III-19〉 노령연금의 완전수급액(maximum age pension rates)	89
〈표 III-20〉 퇴직연금의 기여율 연혁	90
〈표 III-21〉 호주의 정부지원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	94
〈표 III-22〉 강제가입 퇴직연금 기여금의 과세제도	95
〈표 III-23〉 호주의 개인소득세율(2013~14)	96
〈표 III-24〉 호주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제도	98
〈표 III-25〉 호주의 노령층 세액공제제도	98
〈표 IV-1〉 납입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사용자)	102
〈표 IV-2〉 납입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근로자)	103
〈표 IV-3〉 운용수익 발생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104
〈표 IV-4〉 수령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106
〈표 IV-5〉 주요국의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107
〈표 IV-6〉 국가별 공적연금과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의 보험료율 및 상한소득금액	110

그림 목차

[그림 II -1]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1
[그림 II -2] 우리나라 공적연금 적용현황(2012년 말).....	13
[그림 III -1] OECD 국가의 기대수명.....	35
[그림 III -2] 2000년대 후반 노인 소득빈곤율.....	35
[그림 III -3] 노인 부양비율.....	36
[그림 III -4] 미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2010년).....	47
[그림 III -5]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2010년).....	66
[그림 III -6]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84
[그림 III -7] 호주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기금의 운용형태.....	92

I. 서론

- OECD(2013)가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2062년경에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노인 소득빈곤율도 OECD 평균인 12.7%의 4배에 가까운 45.6%를 기록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가 우려되며, 노년층의 노후소득보장도 위태로워짐

- 우리나라의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어 1999년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 연혁이 짧으며, 인구구조 변화, 직업안정성 변화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불안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정도의 소득대체율 보장을 목표로 하였지만, 2007년 연금 개혁을 통하여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임
 - 노령인구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 소득빈곤율도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적용현황(2012년 말)을 보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는 47.7% 정도 되며,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자가 52.3%에 이르고 있음

- 2012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과 함께 2012~2013년에 걸쳐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있었음
 - 근로자의 현실적 퇴직시 퇴직급여의 IRP계정으로의 이전 의무화, 근로자에 의한 IRP 계정 추가 설정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퇴직연금제도의 혼합운용 가능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됨

- 그리고 퇴직소득의 세제혜택 축소,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정, 연금계좌 도입 등을 통하여 연금제도의 유인을 확대

□ 최근 금융위원회는 2013년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우선 추진과제로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 진행과 저금리·저성장 전망에 따라 연금자산 규모의 급속한 증가 및 안전자산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수요의 변화가 그 배경임
-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임

□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적연금의 안정화와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제반 규정을 파악하고, 외국의 연금제도와 연금과세제도를 조사하는 데 두고 있음

- 기존 연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제도 중 사용자에게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함

□ 본 연구는 연금제도와 연금과 관련된 과세제도 측면을 주로 조사하였으며, 보고서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하여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 II 장에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봄
- 제 III 장에서는 OECD의 연금제도 현황과 미국, 독일, 호주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각 국가의 연금과세 관련 규정을 조사하였음
 - OECD 국가의 연금유형을 공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 의무가입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 임의가입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로 구분할 때 공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로 독일, 의무가입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로 호주, 그리고 임의가입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로 미국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함¹⁾
- 제 IV 장에서는 주요국의 연금 과세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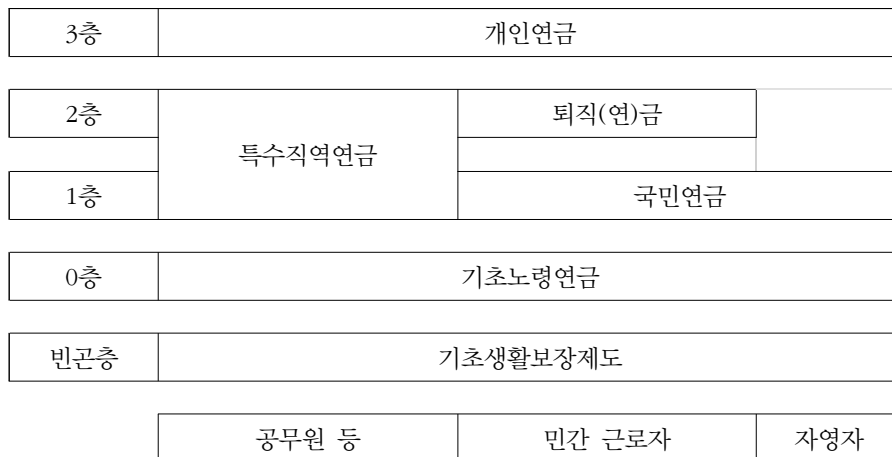
1) “제 III 장의 1. 라. 공적, 의무가입 사적, 임의가입 사적 연금제도의 총소득대체율”에서 상세히 설명함

Ⅱ.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1. 노후소득보장체계

- 우리나라는 소득비례연금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2층 그리고 개인연금이 3층을 구성하여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구축함
 - 0층인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도입되어 조세로 지원되며,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층의 공적연금은 민간부문의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됨²⁾

[그림 Ⅱ-1]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자료: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0. 8.

2)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연구는 제외함

- 2층의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에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신설하여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 3층의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함께 사적 노후보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

2.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 공적연금제도

- 국민연금은 과거의 국민복지연금법을 1986년에 「국민연금법」(법률 제3902호)으로 전부 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현재 국민연금 적용범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으며 의무 가입이나, 광범위한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실제 가입비율은 적용 대상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함³⁾
 - 1988년 실시 당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 당연적용범위가 도시지역 주민에게 확대됨⁴⁾

3)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노령인구 중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낮은 연금을 수급함으로써 빈곤에 처할 우려가 있는 계층을 의미함. 적용 사각지대는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적용제외자가 되고, 특수직역연금가입자,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외되며(가입대상 제외자), 당연가입자 중에서도 특정사유에 의하여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납부예외자)

4) 199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민 및 군지역 거주자에게 당연적용범위가 확대됨

[그림 II-2] 우리나라 공적연금 적용현황(2012년 말)

18~59세 총인구 32,848천명 (100%)						
경제활동인구 22,222천명						
비경제 활동인구 10,626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1,391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831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19,901천명				특수지역연금 1,490천명
		납부예외자 4,665천명	소득신고자 15,236천명		보험료 납부자 14,175천명	
			장기체납자 1,061천명			
32.4%	2.5%	14.2%	3.2%	43.2%	4.5%	
적용사각지대 17,183천명 (52.3%)				보험료 납부자 15,665천명 (47.7%)		

자료: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10. 8.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함
 - 1988년 최초 실시 당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3%로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음
 -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9%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함

-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음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경우에 한함
 - 2012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790,000원(보험료 71,1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소득월액 791,000원 이상의 경우 79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5,5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함

-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함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50% 지원함

-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만 60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개시됨
 -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됨
 -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조정됨
 -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함

-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 기준 70%를 목표로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함
 - 1998년 1차 연금개혁으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을 60%로,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조정함
 - 2008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함

나. 퇴직연금제도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에는 사용자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개인연금제도로 구분됨
 - 여기서는 개인연금제도를 포함한 사적연금제도의 연혁을 개괄한 후, 퇴직금제도와 사용자에 의해 지원되는 퇴직연금제도를 위주로 하여 살펴봄⁵⁾

1) 사적연금제도 연혁

- 개인연금제도(개인연금저축)는 1994년 6월에 도입하였으며, 세제혜택을 제공함⁶⁾

5)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 이용하·임병인(2013)을 참조바람

- 납입 단계시 총불입액(단, 최대 72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로 허용하고, 수령 시 비과세함⁷⁾
 -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후 수령, 최소 5년 이상 연금의 무수령을 요건으로 함
- 2000년 12월 29일 세법개정시 종전 '납입 단계시 부담금의 소득공제 불허(不許), 수령 단계시 연금급여의 비과세방식'의 과세체계가 '납입 단계시 부담금의 소득공제, 수령 단계시 연금수령의 과세방식'으로 전환됨
- 2001년 1월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 개인연금저축을 대체함
- 납입 단계시 연간 저축금액(단, 최대 240만원 한도)의 100%를 소득공제함⁸⁾
 - 가입대상은 18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후 수령, 최소 5년 이상 연금 의무수령을 요건으로 함
 - 개인연금저축의 판매는 중지되었고,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저축제도의 가입이 가능하여 총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됨
 - 수령 단계시 공사연금의 합산액 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함
 - 소득공제의 한도가 2006년에는 300만원, 2011년에는 400만원으로 확대됨
-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 1일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마련됨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구분됨
 - 퇴직연금의 최소 부담률은 8.3%임
 - 연금수령 개시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의 요건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 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수령 개시는 55세 이후, 지급기간은 5년임⁹⁾

6) 납입 단계의 소득공제 허용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제도와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으로 구분됨. 연금보험은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됨

7)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8)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있었음¹⁰⁾¹¹⁾
- 2013년 2월 15일 세법개정시 사적연금의 유형을 연금계좌로 통합함¹²⁾
 - 노후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요건을 개선하고 연금수령한도를 신설함
 - 연간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임)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음
 - 연금수령 개시는 55세 이후, 가입기간은 5년, 최소 10년 연금수령 요건이 있음
 - 연금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연간 공사연금액 600만원에서 사적연금 1,200만원으로 확대함

2) 퇴직금제도

-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야 함¹³⁾¹⁴⁾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¹⁵⁾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11)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내용은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우선 설정 의무화, 가입자별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동시 설정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이직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 의무화, 퇴직연금가입자, 자영업자의 IRP제도 활용 근거 마련 및 가입자의 추가 납입(연 1,200만원) 허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회 의무적립비율을 현행 60%에서 80%(2016년까지) 상향,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납입의무 신설 등이 있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연금계좌 등】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함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6호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퇴직금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임¹⁶⁾
 -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의제도로써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됨
-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음
 -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기업 내부에 적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급여의 우선변제권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제한됨¹⁷⁾
- 일시금의 지급과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함
 - 사내적립금에 대한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세무상 손금산입은 일정한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추계액 한도를 폐지할 예정임¹⁸⁾
- 퇴직금의 사내적립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적립보험(1977년부터 판매), 퇴직보험(1998년), 퇴직신탁(2000년) 등의 사외적립제도가 도입됨¹⁹⁾
 -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중도해약시 수급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하고,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여 퇴직적립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함

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005년 12월 근거법률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10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과거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여타의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소, 1997. 8. 21)이 있었고, 그 이후 우선변제는 최종 3년으로 제한됨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총급여기준과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즉, 총급여의 5%와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의 한도를 적용 후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됨. 2014년 개시사업연도의 한도율은 10%이고 2016년에는 폐지함으로써 사내적립에 대한 손금산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19)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신규가입 및 추가가입 금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1년 5월1일자). 퇴직적립보험은 1977년부터 판매되었으나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미흡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신규가입 및 추가가입을 중지토록 함

- 그러나 기존 사외적립제도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고, 직장 이전시 퇴직금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퇴직적립보험은 2000년 10월 1일자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

3)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 1일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마련되었음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음²⁰⁾

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수준으로 결정됨
- 퇴직급여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함²¹⁾
 - 사용자가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음
 - 그리고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함
 - 기준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2013년 60%에서 2014년부터 70%, 2016년부터 80%로

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7호~제10호

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기준책임준비금이란 다음 중 큰 금액을 말함. ①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향조정됨²²⁾

나)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임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불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임
 - 사용자는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용하는 근로자 개인 별 계좌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는 없음
 -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어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

- 경영성과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연금 부담금 전환
 - 경영성과금은 사전에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적인 부담금의 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²³⁾
 - 단, 경영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시기, 부담방법,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하여야 함

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임²⁴⁾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2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과 - 2990. 2013.8.29.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함
 -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준용함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²⁵⁾
 -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함
 - 연간 1,200만원 이내(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음²⁶⁾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로 이전하여야 함²⁷⁾
 -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도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IRP로 이전할 수 있음
 - 재직 중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좌를 개설해 추가 납입할 수 있음

24) IRP는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개인퇴직계좌(IRA)가 변경된 것임. 종전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았다가 근로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었음.

25)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로써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함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7조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표 II-1〉 퇴직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 개요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연금저축)
		DB	DC	IRP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법) 제8조	근퇴법 제13조	근퇴법 제19조	근퇴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운용주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적립방식	사내적립	사외적립 (최소 70% 이상)	전액 사외적립	-	-
근로자 부담금 납입	납입 불가	납입 불가	납입 가능	납입 가능	납입 가능
근로자 납입한도	-	-	통합 연간 1,800만원 (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1,200만원)		
세액공제 한도	-	-	근로자 부담금의 12%(연간 400만원한도)		
수령방법	일시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연금
연금 수령 요건 ²⁾	근퇴법	-	연금수령 개시는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세법	-	연금수령 개시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지급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 요건 ¹⁾		

주 : 1) 2013. 3. 1. 이전 가입분은 5년 이상 수령이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됨

2)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연금수령한도 초과 또는 일시금)은 ‘연금외수령’이라 함(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3.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 연금제도는 연금 부담금(pension contribution)을 납입하는 단계(납입 단계), 납부된 연금 부담금이 적립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이 누적적으로 운용되는 단계(운용수익 발생 단계), 그리고 연금 급여(pension benefits)을 수령하는 단계(수령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들 단계 중에서 어느 시점에 과세하느냐에 따라 연금과세의 유형이 결정되는데 아래 두 가지의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음²⁸⁾
 - 주로 납입 단계에서 면세(exemption)한 후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도 면세(exemption)하고, 수령 단계에서 과세(taxation)하거나 또는 납입 단계에서는 과세(taxation)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와 수령 단계에서 비과세(exemption)함
 - 전자를 ‘면세-면세-과세형(EET형)’이라고 하고, 후자는 ‘과세-면세-면세형(TEE형)’이라고 함

- 납입 단계의 면세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근로자가 납부한 연금 부담금을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의 면세는 투자수익을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수령 단계에서 연금 급여에 대해 모두 과세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과세누락은 발생하지 않음

-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면세-면세-과세형(EET형)을 중심으로 운영됨
 - 다음 장에서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납입단계, 운용수익 발생 단계, 수령단계로 나누어 살펴봄

가. 공적연금 과세제도

1) 납입 단계

- 국민연금에 불입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종합소득 계산시 전액 소득공제됨²⁹⁾³⁰⁾

28) 이론적으로는 EET형부터 TTT형까지 8가지 형태의 과세가 가능하지만 OECD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EET형과 변형된 EET형을 이용하고 있음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30)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개인부담금은 전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2) 운용수익 발생 단계

-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됨

3) 수령단계

가) 연금수령

- 공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급여는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산출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³¹⁾ 등을 차감하여 연금소득으로 과세함³²⁾
 -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연금 급여부터 해당됨³³⁾
 - 국민연금 등의 과세기준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함

$$\text{과세기간 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text{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³⁴⁾
-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전 연도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월평균소득)을 말함

수 있음.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이 있음

- 31) 과세제외기여금 등이란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의미함.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 32)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 33) 2002년을 전후로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음. 200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연금보험료 납입 단계에서는 소득공제하지 않고, 급여 수령시 비과세함
- 3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³⁵⁾:

$$\text{과세기간 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text{총 기여금 납입월수}}$$

-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며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³⁶⁾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³⁷⁾
- 공적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나. 3).나).(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서 후술함

나) 연금외수령

-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됨³⁸⁾
- 2002년 1월 1일(이하 "과세기준일"이라 함)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함
- 단,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비과세소득임³⁹⁾

3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각종 연금

36)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3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6 제2항

38)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39)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바목

나. 퇴직연금 과세제도

1) 납입 단계

-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납부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됨⁴⁰⁾
-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의 세제 혜택이 적용됨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⁴¹⁾
-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음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함⁴²⁾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

40)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4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손금산입 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음

- ① 및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③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한도 = $\text{Max}[\text{①}, \text{②}] - \text{③}$: ①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②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③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4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동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⁴³⁾

-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에 추가적으로 납입한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납입 단계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⁴⁴⁾
 -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⁴⁵⁾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음⁴⁶⁾⁴⁷⁾
 - 다만,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제외함

〈표 II-2〉 근로자 연금 부담금 과세처리

구분		연금 부담금	세제지원
사적연금	퇴직연금계좌	통합 1,800만원 (IRP 연간 1,200만원)	12% 세액공제 (통합한도 400만원)
	연금저축계좌		
	IRP		

2) 운용수익 발생 단계

-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44) 국세청 법규과-493.2013. 4.26., 서면법규-1069.2013.9.30.

4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46)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및 제3항.

47) 2013년까지는 연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였으나 2012년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함

-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퇴직급여 수령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

3) 수령 단계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소득유형이 달라짐

- 연금계좌평가액 중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연금수령한도 초과 또는 일시금)은 ‘연금외수령’이라 함⁴⁸⁾
-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이연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금액과 운용수익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가) 연금계좌

□ ‘연금계좌’는 종전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의미함⁴⁹⁾

-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탁계약,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및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⁵⁰⁾
-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계좌를 의미함⁵¹⁾

48)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49)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50) 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5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

- 본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본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봄

-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 이내의 연금보험료(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의미함)를 납입할 수 있음
 -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음⁵²⁾

-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봄⁵³⁾
 - 이 경우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봄

- 과세제외금액이란 ①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②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③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함⁵⁴⁾

-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는 다음과 같음
 - ①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 ②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③ 위 ①과 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봄⁵⁵⁾

52)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5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5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

55) ㉠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보험료 등 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세제외를 확인(시행령 제201조의 10) 받은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봄.

- 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적인 퇴직시점이 아니고 연금계좌에서 실제 인출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할 때 그 퇴직소득을 의미함⁵⁶⁾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지만, 그 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으로 실제 인출될 때까지 퇴직소득에 과세를 이연함
 -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함)에서 과세제외 금액을 뺀 금액이 1,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은 연금수령에 해당하더라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봄⁵⁷⁾

나) 연금수령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계좌에서 일정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그 연금 등을 말함⁵⁸⁾⁵⁹⁾
- 2013년 1월 1일 세법개정시 사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지급근거나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소득으로 봄

(1) 일정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 일정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란 연금계좌에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하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으로 봄⁶⁰⁾
 - 일정요건이란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56) 소득세법 제146조

57)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58) 소득세법 제20조의3

59)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앞장에서 설명함

60)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5항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단, 이연퇴직 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함)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을 말함

○ 연금수령한도란, 아래의 산식을 통해 계산함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 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음⁶¹⁾

(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및 소득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⁶²⁾⁶³⁾
 - 연금소득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 80세 이상인 경우 3%의 세율 적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의 세율 적용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의 세율 적용⁶⁴⁾
 - 상기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4항.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의 경우에는 6년차, 연금계좌의 가입자 사망으로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기산연차로 봄

6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

63) 소득세법 제143조의 2 제2항

64)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표 II-3〉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분	세율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 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80세 이상 :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하는 연금소득	3%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

주: 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⁶⁵⁾

○ 이를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고 함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표 II-4〉 참조)를 적용한 금액임⁶⁶⁾

○ 총연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공적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은 제외)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뺀 금액임

– 선택적 분리과세에 의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제외함

○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구간별로 연금소득공제액을 설정하고 있음

〈표 II-4〉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¹⁾

주: 1) 공제액이 900만원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을 공제

65)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9호

66)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다) 연금외수령의 경우

-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에 따라 소득이 구분됨
 -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임
 - 사용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임

- 기타소득은 15%로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함
 - 단,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질병·부상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2%세율을 적용함⁶⁷⁾
 - 이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종료됨

- 퇴직소득은 40%의 소득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하고, 연분연승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함⁶⁸⁾⁶⁹⁾
 -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의미함

67)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

68)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근속연수가 아닌 5년 기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함.

69) 근속연수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

-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인 경우에는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표 II-5〉 연금 과세체계

소득원천	납입 단계/운용수익 발생 단계 과세이연 여부	수령 단계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소득구분	과세방법	소득구분	과세방법
사용자 연금 부담금	과세이연	연금소득 ⁵⁾	3 ~ 5% ³⁾ 선택적 분리과세 ⁴⁾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퇴직소득	기본세율 분류과세
	운용수익 과세이연 ⁶⁾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단, 부득이한 경우 12%)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²⁾
근로자 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¹⁾	연금소득		기타소득	
	운용수익 과세이연	연금소득		기타소득	

- 주: 1) 개인연금저축 통합한도인 400만원 내에서 연금계좌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함. 2013년까지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하였음. 세액공제 미적용액은 과세에서 제외됨
 2)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과세됨
 3)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5%에서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함
 4) 사적연금소득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함
 5) 연금수령한 금액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에서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봄
 6) 퇴직전 발생한 운용수익 과세이연된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봄

Ⅲ. 주요국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1. 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

가. 기대수명과 노인의 소득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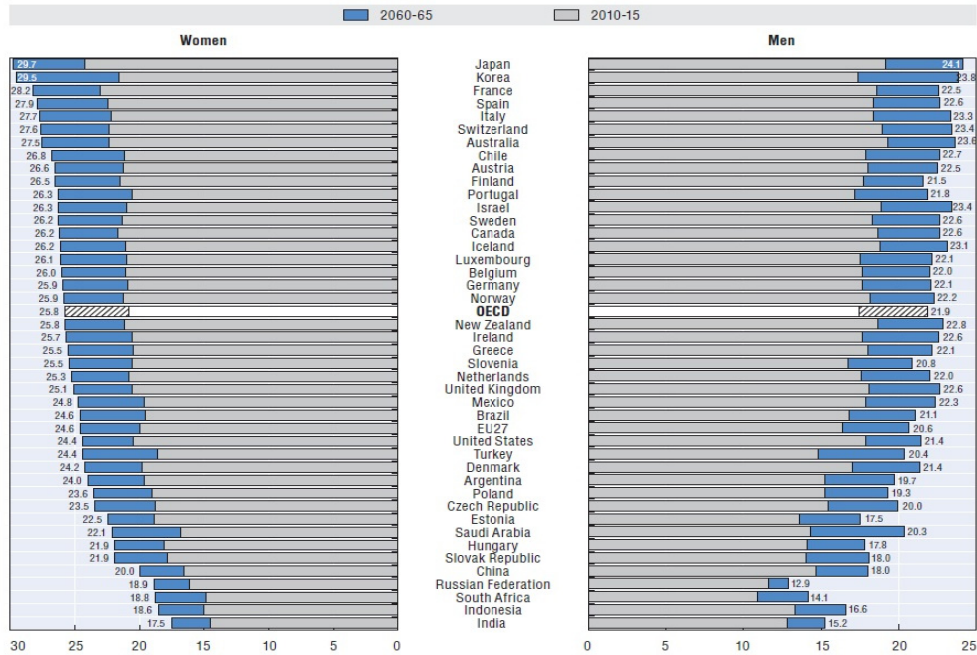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2062년경에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OECD(2013)⁷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기점 기대수명은 남성 23.8세, 여성 29.5세로 2060~2065년에 일본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노령층의 기대수명은 은퇴 이후의 소득(연금)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요소임
 - 기대수명과 연금급여 수준 연계의 중요성에 따라 연금의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봐야 함

- 우리나라의 2000년대 후반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인 12.7%의 4배에 가까운 45.6%를 기록하고 있음
 -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 가처분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령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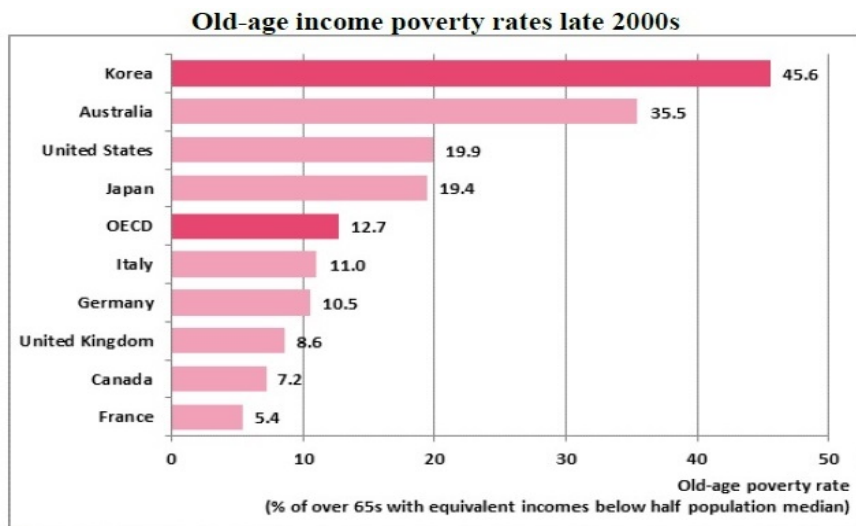
70)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highlights-Korea*

[그림 III-1] OECD 국가의 기대수명



자료: OECD(2013), p.181

[그림 III-2] 2000년대 후반 노인 소득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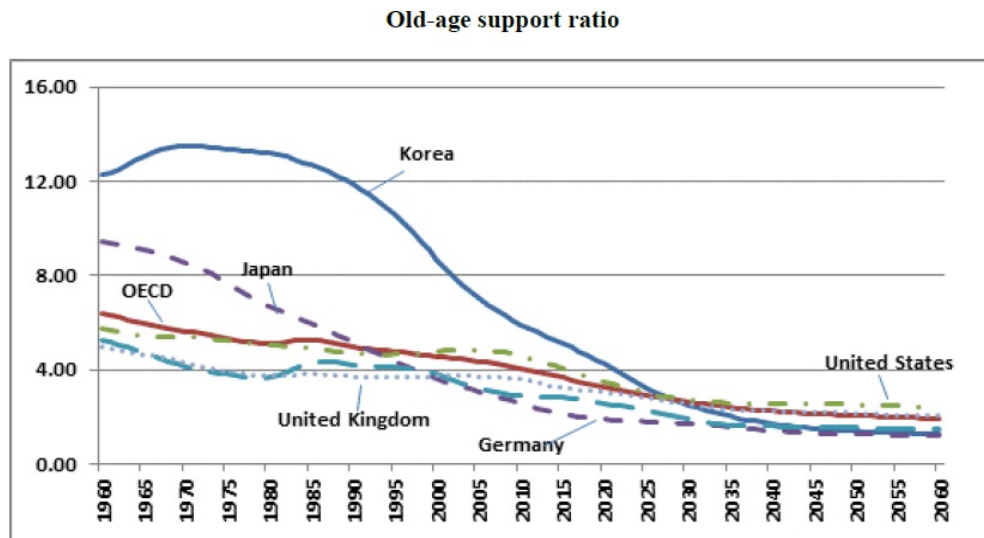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highlights-Korea*, p.1

나. 노인 부양비율

- 노인 부양비율(old-age support ratio)은 65세 노인 1인당 근로가능한 연령(20~61세)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인구 1명당 근로가능연령이 칠레, 멕시코, 터키에 이어 4번째인 5.6명으로 젊은 국가에 해당됨
 - 하지만, 2062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3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⁷¹⁾
 - 연금급여의 재원 마련과 노동시장의 노령층 수용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Ⅲ-3] 노인 부양비율

(단위: 명)



자료: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highlights-Korea*, p.2

71) OECD(2013)

다. 소득계층별 총연금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

□ 총연금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은 근로소득(earning) 대비 은퇴시 연금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퇴 이전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음

○ OECD는 소득대체율을 연금급여가 개인의 생애평균소득(individual lifetime average earnings)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 전반 소득증가에 따라 재평가)으로 계산하였으며, 소득대체율 산정시 경제 전반(전산업)의 평균소득자를 적용하고 있음

〈표 Ⅲ-1〉 OECD 국가의 소득계층별 총소득대체율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by earnings)

(단위: %)

국가	개인소득, 평균소득의 배수			
	중위소득자 (median earner)	0.5	1	1.5
호주	60.2	91.1	52.3	39.4
오스트리아	76.6	76.6	76.6	74.0
벨기에	41.4	58.2	41.0	30.2
캐나다	51.0	80.1	45.4	30.2
칠레	45.5	57.3	41.9	37.3
체코	59.9	85.2	52.2	41.2
덴마크	83.7	120.7	75.5	64.4
에스토니아	55.3	65.2	52.2	47.9
핀란드	54.8	64.1	54.8	54.8
프랑스	59.1	64.8	58.8	47.5
독일	42.0	42.0	42.0	42.0
그리스	64.0	75.4	53.9	46.7
헝가리	73.6	73.6	73.6	73.6
아이슬란드	73.8	91.7	72.3	70.1
아일랜드	44.2	73.4	36.7	24.5
이스라엘	86.7	10.37	73.4	48.9
이탈리아	71.2	71.2	71.2	71.2
일본	37.5	49.8	35.6	30.8
한국	43.9	59.2	39.6	29.2
룩셈부르크	59.3	77.7	56.4	53.0

〈표 Ⅲ-1〉의 계속

국가	개인소득, 평균소득의 배수			
	중위소득자 (median earner)	0.5	1	1.5
멕시코	44.7	55.5	28.5	27.2
네덜란드	91.4	94.4	90.7	89.4
뉴질랜드	50.1	81.1	40.6	27.0
노르웨이	52.3	63.4	52.5	41.6
폴란드	48.8	49.3	48.8	48.8
포르투갈	55.0	67.5	54.7	54.1
슬로바키아	67.9	74.2	65.9	63.4
슬로베니아	40.6	62.0	39.2	36.7
스페인	73.9	73.9	73.9	73.9
스웨덴	55.6	70.2	55.6	67.9
스위스	58.4	64.3	55.2	36.8
터키	66.8	73.5	64.5	64.5
영국	37.9	55.8	38.3	33.4
미국	41.0	49.5	38.3	33.4
OECD34	57.9	71.0	54.4	48.4

자료: OECD(2013), p.135

- OECD는 소득계층별 총소득대체율을 중위소득자, 평균소득자, 평균소득의 50%인 소득자, 평균소득의 150%인 소득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득대체율을 산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39.6%로 34개 국가 중에서 28위이며, OECD 평균은 54.4%임
- 우리나라의 평균소득의 50%인 소득자(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59.2%이며, 34개 국가 중에서 25위 수준임
- 중위소득자(근로자의 절반은 그 이상, 절반은 그 이하 소득 수준)의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57.9%이며, 우리나라는 43.9% 수준임⁷²⁾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평균소득 근로자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근로자의 노후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⁷²⁾
 - 예를 들어, 평균소득의 50%인 근로자는 평균소득계층의 소득대체율 54.4%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71%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됨
 -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각 국가의 연금이 가지고 있는 재분배기능을 반영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라. 공적, 의무가입 사적, 임의가입 사적 연금제도의 총소득대체율

-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는 총연금대체율을 <표 III-2>를 통해 살펴보면 사적 연금이 고령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OECD 국가의 평균소득층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6%이며, 의무가입 사적연금을 포함한 소득대체율은 54.0%임
 - 우리나라의 평균소득층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9.6%임
 - 의무가입(공적연금, 의무가입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임의가입 사적연금을 합한 평균소득대체율은 67.9%임

72) 중위소득은 중간 값의 75~90% 사이로 산정된 값으로 계산되었음

73) OECD(2013)

〈표 Ⅲ-2〉 OECD 국가의 공적, 의무가입 사적, 임의가입 사적 연금제도의 총소득대체율

국가	공적			의무가입 사적			임의가입 DC			의무가입 합계			임의가입 합계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0.5	1.0	1.5
호주	52.4	13.6	0.6	38.7	38.7	38.7				91.1	52.3	39.4			
오스트리아	76.6	76.6	74.0							76.6	76.6	74.0			
벨기에	58.2	41.0	30.2				15.1	15.1	11.2	58.2	41.0	30.2	73.3	56.2	41.4
캐나다	63.1	39.2	26.1				33.9	33.9	33.9	63.1	39.2	26.1	97.0	73.1	60.1
칠레	20.4	4.8	0.0	36.9	37.2	37.3				57.3	41.9	37.3			
체코	71.8	43.5	34.1				39.2	39.2	39.2	71.8	43.5	34.1	111.0	82.8	73.4
덴마크	68.0	30.6	18.1	52.6	47.9	46.4				120.7	78.5	64.4			
에스토니아	40.4	27.4	23.0	24.8	24.8	24.8				65.2	52.2	47.9			
핀란드	64.1	54.8	54.8							64.1	54.8	54.8			
프랑스	64.8	58.8	47.5							64.8	58.8	47.5			
독일	42.0	42.0	42.0				16.0	16.0	16.0	42.0	42.0	42.0	58.0	58.0	58.0
그리스	75.4	53.9	46.7							75.4	53.9	46.7			
헝가리	73.6	73.6	73.6							73.6	73.6	73.6			
아이슬란드	25.9	6.5	4.3	65.8	65.8	65.8				91.7	72.3	70.1			
아일랜드	73.4	36.7	24.5				43.0	43.0	43.0	73.4	36.7	24.5	116.4	79.7	67.5
이스라엘	44.5	22.2	14.8	59.3	51.1	34.1				103.7	73.4	48.9			
이탈리아	71.2	71.2	71.2							71.2	71.2	71.2			
일본	49.8	35.6	30.8							49.8	35.6	30.8			
한국	59.2	39.6	29.2							59.2	39.6	29.2			
룩셈부르크	77.7	56.4	53.0							77.7	56.4	53.0			
멕시코	30.7	3.8	2.5	24.7	24.7	24.7				55.5	28.5	27.2			
네덜란드	59.1	29.5	19.7	35.3	61.1	69.7				94.4	90.7	89.4			
뉴질랜드	81.1	40.6	27.0				14.1	14.1	14.1	81.1	40.6	27.0	95.3	54.7	41.2
노르웨이	57.9	45.7	34.3	5.5	6.8	7.2	8.3	11.3	16.5	63.4	52.5	41.6	71.6	63.8	58.1
폴란드	24.5	24.5	24.5	24.3	24.3	24.3				48.8	48.8	48.8			
포르투갈	67.5	54.7	54.1							67.5	54.7	54.1			
슬로바키아	45.9	37.6	35.1	28.3	28.3	28.3				74.2	65.9	63.4			
슬로베니아	62.0	39.2	36.7							62.0	39.2	36.7			
스페인	73.9	73.9	73.9							73.9	73.9	73.9			
스웨덴	48.6	33.9	25.7	21.7	21.7	42.2				70.2	55.6	67.9			
스위스	49.3	32.0	21.4	14.9	23.1	15.4				64.3	55.2	36.8			
터키	73.5	64.5	64.5							73.5	64.5	64.5			
영국	55.2	32.6	22.5				34.5	34.5	34.5	55.2	32.6	22.5	89.7	67.1	57.0
미국	49.5	38.3	33.4				37.8	37.8	37.8	49.5	38.3	33.4	87.4	76.2	71.2
OECD34	57.4	40.6	34.5							70.1	54.0	48.0	88.9	67.9	58.6

자료: OECD(2013), p. 137

- OECD 국가 중 17개 국가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대체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7개 국가 중 우리나라, 일본 등 12개 국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음
 - 독일(16.0%), 노르웨이(11.3%), 벨기에(15.1%), 뉴질랜드(14.1%), 체코(39.2%)는 자발적 사적연금을 통해 공적연금과 함께 연금의 소득대체율 효과를 보장하고 있음

- 의무가입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국가 중 9개 국가는 소득대체율이 공적연금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임
 - 호주,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9개 국가는 공적연금에 비해 의무가입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음
 - 헝가리, 스웨덴, 스위스, 에스토니아 4개 국가는 의무가입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공적연금보다는 낮지만, 평균 2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적연금을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가입 사적연금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임
 - 3유형 국가는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30~40% 수준이며, 임의가입 사적연금을 통해 소득대체율로 총소득대체율 70%(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Ⅲ-3〉 연금 유형별 OECD국가 비교

구분	국가
1유형: 공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	한국, 독일 , 일본,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체코, 터키(17개)
2유형: 의무가입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	호주 , 스위스,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칠레,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13개)
3유형: 임의가입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	미국 ,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4개)

자료: 최성민(2013), p. 5 참조 및 수정

마. 공적연금 기여율(public pension contribution rates)과 규모

- OECD 국가 중 자료가 있는 23개국은 연금기여금으로 징수한 수입은 평균적으로 국민 소득의 5.2%에 해당되며, 각국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징수한 총조세수입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

- OECD의 2012년 근로자의 총기여액 평균은 GDP의 1.8%인 반면, 고용주의 기여액 평균은 2.9%임
 -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연금의 35%를 납부하고, 고용주는 57%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나머지는 주로 자영업자의 기여금 등임)
 - 체코,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은 고용주에게 연금의 높은 기여금이 부과되는 나라임
 -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고르게 배분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캐나다, 독일, 미국, 일본, 스위스 등임

- 2012년 우리나라의 총소득 대비 연금기여율은 9%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4.5%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음
 - 반면, OECD의 총소득 대비 연금기여율의 평균은 19.6%로 근로자가 8.4%, 고용주가 11.2% 수준으로 연금에 기여하고 있음

〈표 III-4〉 OECD 국가의 공적연금 기여율과 수입의 규모

국가	연금기여율(총소득 대비 %)					연금기여금 수입(revenues)(2008년)			
	1999	2004	2012	근로자 2012	고용주 2012	(GDP 대비 %)			총조세 (total taxes) 대비 %
						근로자	고용주	합계	
호주	강제가입 사적연금 기여금만 존재					0.0	0.0	0.0	0.0
오스트리아	28.8	22.8	22.8	10.3	12.6	3.5	3.7	7.8	20.1
벨기에	16.4	16.4	16.4	7.5	8.9	2.3	2.0	4.7	11.5
캐나다	7.0	9.9	9.9	5.0	5.0	1.2	1.2	2.6	9.1
칠레	-	29.8	29.8	28.8	1.0	-	-	-	-
체코	26.0	28.0	28.0	6.5	21.5	1.8	6.0	8.3	24.7
덴마크	사적연금 기여금만 존재					0.0	0.0	0.0	0.0
에스토니아	-	35.0	22.0	2.0	20.0	-	-	-	-
핀란드	21.5	21.4	22.8	5.2	17.7	1.8	6.8	9.0	22.9
프랑스	16.7	16.7	16.7	6.8	9.9	-	-	-	-
독일	19.7	19.5	19.6	9.8	9.8	2.8	3.2	6.9	20.2
그리스	20.0	20.0	20.0	6.7	13.3	3.4	4.3	9.2	25.5
헝가리	30.0	26.5	34.0	10.0	24.0	1.4	6.4	8.3	23.0
아이슬란드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	-	-	-
아일랜드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	-	-	-
이스라엘	-	6.1	6.9	3.9	3.1	-	-	-	-
이탈리아	32.7	32.7	33.0	9.2	23.8	2.2	6.8	9.0	21.1
일본	17.4	13.9	16.8	8.4	8.4	3.2	3.1	6.3	22.8
한국	9.0	9.0	9.0	4.5	4.5	1.2	0.9	2.1	9.0
룩셈부르크	16.0	16.0	16.0	8.0	8.0	2.8	2.4	5.9	17.4
멕시코	사적연금 기여금만 존재					0.0	0.0	0.0	0.0
네덜란드	17.9	17.9	17.9	17.9	0.0	-	-	-	-
뉴질랜드	기여금 없음					0.0	0.0	0.0	0.0
노르웨이	사적연금 기여금만 존재					-	-	-	-
폴란드	19.5	19.5	19.5	9.8	9.8	3.0	2.6	6.8	24.1
포르투갈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	-	-	-
슬로바키아	27.5	26.0	18.0	4.0	14.0	0.9	2.5	4.3	16.4
슬로베니아		24.4	24.4	15.5	8.9				
스페인	28.3	28.3	28.3	4.7	23.6	1.4	6.8	9.2	28.0
스웨덴	15.1	18.9	18.4	7.0	11.4	2.5	3.6	6.2	14.6
스위스	9.8	9.8	9.8	4.9	4.9	2.7	2.7	5.9	21.5
터키	20.0	20.0	20.0	9.0	11.0	1.1	1.3	2.4	12.0
영국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	-	-	-
미국	12.4	12.4	10.4	4.2	6.2	2.1	2.1	4.2	18.5
OECD 34	19.3	20.0	19.6	8.4	11.2	1.8	3.0	5.2	15.8

주: 1. 총조세(total taxes)는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한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자영업자 등)의 연금납부액도 포함되었음

2. 수치는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된 것이며, 수입에 대한 OECD 평균은 기여금이 없는 국가를 위해 0을 포함

자료: OECD(2013), p. 169

- OECD(201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⁷⁴⁾
 - OECD는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이 2010년 9.3%에서 2050년 11.7%로 1.26배 증가하지만, 한국은 2010년 0.9%에서 5.5%로 6.1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바. 연금지출(pension-benefit expenditures): 공적 및 사적

- OECD 34개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는 사적연금이 의무가입(Mandatory private scheme)이거나 노사협약을 통해 보편적으로 가입되는 준의무가입형(Quasi mandatory)을 운영하고 있음
-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GDP의 9.2% 정도를 공적 및 사적연금 급여에 지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공적 및 사적연금 급여지출이 GDP의 2.2% 수준이며, 미국은 GDP의 10.7%, 독일은 GDP의 12.1%, 호주는 GDP의 5.5%임(2009년 기준)

74) OECD(2013), p. 175

〈표 III-5〉 OECD 국가의 연금급여지출: 공적 및 사적

제도 유형		연금 급여 지출(Pension-benefit expenditures) : 공적 및 사적, 1990~2009								
		사적연금제도 급여지출액 (Benefit expenditure of private pension schemes)						변화율 (%)	공적 및 사적 급여지출 (Public and private benefit spending) (GDP 대비 %)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우대혜택 (Tax breaks for private pensions) (GDP 대비 %)
		수준(GDP 대비 %)								
		1990	1995	2000	2005	2009				
호주	m		1.8	2.9	1.9	2.0		5.5	2.0	
오스트리아	v	0.4	0.4	0.5	0.5	0.7	60.2	14.2	0.1	
벨기에	v	1.0	1.7	1.4	1.5	1.4	38.0	11.5	0.2	
캐나다	v	2.6	3.5	4.0	4.3	3.7	43.9	8.2	1.3	
칠레	m		0.9	1.1	1.3	1.3		4.9		
체코	m	a	a	0.2	0.2	0.4		8.8	0.1	
	v	a	0.0	0.0	0.0	0.1				
덴마크	q/m	1.5	1.8	2.0	2.3	2.5	59.3	8.6		
에스토니아								7.9		
핀란드	v	0.1	0.4	0.3	0.2	0.3	184.3	10.2	0.1	
프랑스	m	0.2	0.1	0.2	0.2	0.2	-1.4	14.1	0.0	
	v	0.1	0.1	0.1	0.1	0.1	189.6			
독일	v	0.7	0.7	0.8	0.8	0.8	22.9	12.1	0.9	
그리스	v	0.4	0.4	0.5	0.5	0.4	-0.1	13.4		
헝가리								9.9		
아이슬란드	v	1.4	1.8	2.3	2.8	3.7	166.5	5.5	1.1	
아일랜드	v	0.9	1.0	0.8	0.8	1.1	23.1	6.2	1.2	
이스라엘								5.0		
이탈리아	m	2.7	3.1	1.2	1.1	1.2	-55.2	17.0	0.0	
	v	0.3	0.2	0.2	0.2	0.3	0.2			
일본	m	0.2	0.3	0.5	a	a		13.3	0.6	
	v	a	a	3.0	2.3	3.1				
한국	v	m	0.0	0.0	0.0	0.0		2.2		
룩셈부르크	v	a	a	a	0.6	0.6		8.2	0.0	
멕시코								1.7	0.2	
네덜란드	m	a	0.0	0.0	0.0	0.0		10.7		
	q	3.9	4.7	4.8	5.2	5.6	44.6			
뉴질랜드								4.7		
노르웨이	v	0.6	0.6	0.6	0.6	0.6	11.2	6.0	0.9	
폴란드								11.8	0.0	
포르투갈	v	0.3	0.3	0.3	0.6	0.5	64.5	12.8	0.1	
슬로바키아	v	a	0.1	0.1	0.4	0.3		7.3	0.2	
슬로베니아								10.9		
스페인								9.3	0.2	
스웨덴	q/m	1.2	1.9	1.8	2.1	2.4	99.3	10.7		
스위스	m	3.2	4.9	5.8	6.0	5.8	84.3	12.1		
	v	0.0	0.0	0.0	0.0	a				
터키								6.8		
영국	v/m	4.3	5.2	6.1	4.8	4.6	6.7	10.8	1.4	
미국	v/m	2.7	3.1	3.8	3.8	3.9	44.6	10.7	0.8	
OECD		1.3	1.4	1.5	1.5	1.6	26.7	9.2	0.5	

주: m = 의무가입형(Mandatory private scheme), q = 준 의무가입형(Quasi mandatory) v = 임의가입형 (Voluntary)

자료: OECD(2013), p. 173

- 사적연금 납부액(private-pension payments)이 가장 큰 나라는 스위스로 2009년 GDP의 5.8%임
 - 스위스 다음으로 네덜란드는 GDP의 5.6%를 사적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은 GDP의 3.7%에서 4.6% 수준임

-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사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저축에 세금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개인의 기여금은 일부 혹은 전액 소득세에서 공제가능하며, 투자수익은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음
 - OECD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금우대혜택은 평균적으로 GDP의 0.5% 수준이며, 호주는 2.0%, 독일은 0.9%, 미국은 0.8%임

2. 미국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 미국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2층은 공적연금, 3층은 사용자가 지원하는 직역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됨⁷⁵⁾
 - 1층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임
 - 1972년 도입된 SSI는 자산조사에 의해 확인된 경제적으로 빈곤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2층은 사회보험에 기초한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와 철도직원 퇴직제도, 구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의 제도가 직종별로 분리운영됨
 - 3층은 사용자에게 의해 지원되는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인 개인퇴직계좌

75) 국민연금연구원(2013b), p. 54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로 구성됨

-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사적연금제도는 준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⁷⁶⁾
 -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인 기업연금(Occupation pension)으로 이해되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제공됨
- 1974년에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이 제정된 후 퇴직연금제도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음⁷⁷⁾

[그림 Ⅲ-4] 미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2010년)

4층	개인저축		
3층	사적연금 private pension 가입자수: 경제활동인구의 41.6%	개인 퇴직계정 IRA 가입자: 경제활동인구의 22%	공무원 부가직 역연금
2층	공적연금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OASDI) 적용자수: 1억 5,670만명(경제활동인구의 94%) 수급자: 5,400만 명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CERS),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퇴 직연금
1층	보충소득제도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총수급자 791만명(노인 204만명, 장애인 463만명)		
대상	근로자	자영자	연방, 주, 지방 지방정부공무원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3b), p. 45 <그림 9> 인용

76) 김대환·류건식·이상우(2011), p. 63

77) ERISA는 주로 적격연금제도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의 비세제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연방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는 조세지원 적용을 위한 적격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용과 관련된 적격요건들을 규정함

나.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

-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면서 공적 연금인 OASDI가 도입됨
 - 노인·유족·장애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임

- 국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1984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연방공무원, 철도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철도근로자,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일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공무원, 소득미달로 최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사근로자 및 농업근로자, 연간소득이 400달러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자는 제외됨⁷⁸⁾

- OASDI의 재원조달은 부과방식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됨
 - OASDI의 보험료율은 2014년 현재 12.4%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전액 부담함
 - OASDI 부과 상한소득액은 전국평균임금 지수(National Average Wage Index) 변동률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2014년 상한소득액은 117,000달러(2013년은 113,700달러)임
 -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음

78) 국민연금연구원(2013b), p. 56

〈표 Ⅲ-6〉 미국 OASDI 보험료율 추이

(단위: %)

연도	보험료율	
	사용자와 근로자	자영업자
1937~1949	2	-
1950	3	-
195~1953	3	2,25
1954~1956	4	3.0
1960~1961	6	4.5
1962	6,25	4.7
1963~1965	7,25	5.4
1970	8,4	6.3
1975	9.9	7.0
1980	10,16	7.05
1985	11,4	11,4
1990~현재	12,4	12,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미국 연금제도(OASDI) 인용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ASDI 보험료를 실업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해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함
 - 2010년 1월 3일 이후 실업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OASDI를 전액 면제함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자 부담분과 자영업자 부담분에서 2%씩 경감함

2) 퇴직연금제도

- ERISA는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를 기본적인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DB) 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미래에 수령하는 근로자의 연금급여를 근무연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함

-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참여 근로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에 설정된 신탁에 정규적인 연금 부담금을 납부함
 - 근로자 개인별로 연금계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제도에 참여한 각 근로자는 확정 미지급 급여(the vested accrued benefit)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됨
 - 근로자가 은퇴 전에 이직하는 경우 연금급여가 개시되는 은퇴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확정 미지급 급여액은 신탁자산에 동결됨
 - 사용자의 지급능력 상실시 퇴직연금보험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가 급여지급을 보증함⁷⁹⁾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함
- 추가하락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에 적립된 자산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채가 증가할 수 있음
 - 2000년대 초반 추가하락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실화로 인한 퇴직연금보험공사의 재정악화가 발생하여 이를 대처하고자 2006년 연금보험법(Pension Protection Act, PPA)이 제정됨
 - PPA의 주된 내용은 연금수급권 보장, 연금부채의 정확한 산정,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가 있음
- 미국의 대표적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연금신탁제도가 있음
- 사용자는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 금액의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용자가 연금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Non-Contributory Pension Plan)와 근로자가 연금 부담금을 일부 납부하는 경우(Contributory Pension plan)가 있음
 - 사용자 부담금은 종업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 산입이 허용됨
 - 그러나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79) 퇴직연금보험공사는 기업연금 수급권 지급보증을 위하여 운용되는 지급보증기관임

나)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개인연금 계정에 연금 부담금이 적립되는 형식이므로 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투자결정을 할 수 있음
 - 각 근로자별로 개인 계좌를 가지며 개인 계좌마다 연금 부담금, 계정에 배분되는 비용과 투자수익 및 연금급여가 종합적으로 관리됨
 - 연금 부담금의 납부는 구체적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시점의 연금 부담금은 확실히 이루어지나 은퇴 시점의 연금 급여수준은 보장되지 않아 투자위험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음
 - 연기금 및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비용 및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더 선호함

- 은퇴이전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연금수급권을 개인 계정으로 이전(rollover)할 수 있는 통산제도가 적용되며, 연금 급여 지급 형태는 일시금 지급, 분할지급, 가입자에 대한 종신연금, 가입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평생종신연금 형태로 지불됨

- 가입대상에 따른 유형으로는 401(k)제도, 457제도, 403(b)제도, 키오플랜(Keogh Plan)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401(k)제도의 상세내용은 후술함
 - 457제도는 IRC 457조에 의해 규정된 주·지방 공공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로 과세이연의 혜택이 없고 조기인출시 10%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403(b)제도는 IRC 403(b)조에 규정된 비영리단체의 근로자, 병원단체연합회, 자영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기본적인 내용은 401(k)와 유사함
 - 1962년에 도입한 자영업자와 동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도 키오플랜에 가입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 제도와 동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통한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고,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불입한 연금 부담금은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됨

(1) 401(k)제도

- 401(k)제도는 현금수령 혹은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Cash or Deferred Arrangements, CODAs)이 1978년에 IRS 401(k) 조항으로 추가되면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이름이 붙여짐
 - 별개의 독립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이익분배제도, 금전구입제도, 주식상여제도, SIMPLE 등에 결합될 수 있는 제도임
 - 근로자가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일정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형태로 수령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연금 부담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를 이를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라고 함
 - 특정 경우에 한하여 조기 인출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로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소득세 이외에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됨

- 401(k)제도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함
 - 기존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Roth 401(k)는 2006년 IRC 402(A) 규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401(k)와 Roth IRA의 특성을 결합한 확정기여형 제도임
 - Roth 401(k)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후소득으로 적립함
 - 401(k)는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세전소득으로 적립하게 됨
 - 59.5세 이후 연금 급여 수령시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음
 - Roth IRA는 아래 3)에서 후술함

(2)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s)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한을 부여하여 퇴직연금으로 신탁기금(Trust Fund)에 적립하도록 허용한 연금제도임
 - 기업 수익규모에 따라 적립금 수준이 결정되므로 사용자는 매년 납입할 의무는 없음
 -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401(k) 제도를 결합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함

(3) 금전구입제도(Money Purchase Plans)

- 사용자는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연금 부담금으로 신탁기금(Trust Fund)에 적립하는 제도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임
 - 매년 고정적인 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근로자 개인계좌에 적립됨
 - 조기인출 및 대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은퇴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함

3)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 사용자 지원을 받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어려운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974년 ERISA의 시행과 함께 도입됨
 - 소득공제의 세제지원을 통해 과세이연(Tax deferral)이라는 효과를 누리면서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1981년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도 70.5세까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활용됨⁸⁰⁾
 - 조기 인출하는 경우에는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됨

- 다양한 유형의 IRA가 운용됨

80) 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 Traditional IRA는 개인연금 부담금은 대부분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세전 저축의 성격을 가지며,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의 투자수익은 인출시 통상소득으로 과세됨
-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되는 조세지원 혜택이 있음
-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 IRA와 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SIMPLE) IRA가 있음
 - 사용자 지원 IRA의 유형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으로도 분류될 수 있음
 - SEP IRA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임
 - SIMPLE IRA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로 401(k)제도의 적용이 허용됨
- Roth IRA는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세후소득으로 적립됨
 -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59.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 급여액에 대해서는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음
 - Traditional IRA와 달리 소득제한이 있음
 - 기혼인 경우에는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GI)이 188,000달러, 미혼인 경우에는 129,000달러임
 - 최대 적립한도는 5,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500달러임)이며 Traditional IRA와 동일함

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 공적연금의 과세제도는 연금 부담금의 납입 단계와 연금 급여의 수령 단계로, 그리고 퇴직연금은 연금 부담금의 납입단계, 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 발생 단계, 그리고 연금 급여 수령단계별로 알아봄

1) 공적연금 과세제도

가) 납입 단계

- 공적연금에 불입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니고,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되지 않음

나) 운용수익 발생 단계

-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됨

다) 수령 단계

- 공적연금 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는 공적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⁸¹⁾
- 공적연금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소득액(Provisional income)과 기준금액(Base amount)을 비교하여 과세소득 여부를 결정함⁸²⁾
 - 여기서 추계소득이란 공적연금 급여의 50%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소득을 의미하고, 기준소득이란 공적연금 급여의 과세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신고유형에 따라 결정됨⁸³⁾
 - 추계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적연금 급여는 비과세됨
- 추계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 급여의 50%을 과세함
 - 급여의 50%와 그 외 다른 소득의 합계가 34,000달러(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44,000

81) 사망일시금(the lump-sum death benefit)은 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아님

82) IRS, Publication 915 Social Security and Equivalent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2013, p. 6

83) 기준소득은 ① 독신자, 세대주, 적격 미망인의 신고의 경우에는 25,000달러 ②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에는 32,000달러 ③ 기혼 단독신고의 경우에는 0임

달리)이거나 기혼 단독신고인 경우에는 85%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총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 공적연금 관리기관에서 연금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신고의무를 종료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7%, 10%, 15%, 25%의 세율이 적용됨⁸⁴⁾

2) 퇴직연금 과세제도

- 미국 퇴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EET(면세-면세-과세) 형태이며, Roth 401(k) 제도의 경우에는 TEE(과세-면세-면세) 형태에 따름
- 적격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은 IRC와 ERISA에서 규정하고 있음⁸⁵⁾⁸⁶⁾
 - 납입 단계의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일정 한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납입 단계의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단, 401(k) 제도가 결합된 경우에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됨
 - 연금 적립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됨
 - 손금산입, 소득공제, 운용시 투자수익 비과세 등을 통하여 누적된 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연금 급여를 수령할 때 과세됨

가) 납입 단계

-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고,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84) Form W-4V Voluntary Withholding Request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Certain Federal Government Payment

85) ERISA는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을 규정함. IRC 401(a)

86) 이상윤(2001), p. 30

- 근로자에 의한 연금 부담금의 납입이 허용되는 적격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

(1)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완전적립금 한도(full funding limitation)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세소득 목적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음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연금 급여는 연속된 3년 중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기간의 평균 총급여의 100% 또는 210,000달러 중 적은 금액임
 - 완전 적립금이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연금 급여액의 현재가치의 100%를 의미하며 보험계리상 방법으로 계상됨
 - 손금산입 한도의 초과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exercise tax)이 한도초과 출연금이 소멸할 때까지 부과됨⁸⁷⁾
-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2)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 연금 적립금 한도범위는 총급여(최대 260,000달러)의 100%와 52,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개별 근로자별로 계산됨
 - 추가 연금 부담금(Catch-up contribution)은 한도범위에서 제외됨
- 사용자 부담금의 손금산입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됨⁸⁸⁾
 - 사용자 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의 총 급여의 25%임
 - 총급여는 260,000 달러(2013년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액도 포함됨

87) Code section 4972

88) IRC Sec. 404(a)(3)

–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차기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며, 매년 10%의 징벌적 세금 (exercise tax)이 부과됨

□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는 401(k)제도와 결합되는 경우에 허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가) 401(k)제도의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 적용

□ 근로자는 선택적 이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 본인의 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⁸⁹⁾

○ 선택적으로 이연된 금액은 납입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 근로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됨

– 사용자 연금 부담금과 동일한 과세처리임

□ 근로자가 불입할 수 있는 선택적 이연의 한도는 총급여(최대 260,000달러)의 25%와 17,500달러(2014년 기준) 중 적은 금액임⁹⁰⁾

○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택적 이연 이외에도 5,500달러(2014년 기준)의 추가 연금 부담금(Catch-up contribution)적립을 허용함

○ 17,500달러의 한도기준은 SEP와 401(k)제도, SIMPLE IRA제도, Section 403(b)제도의 급여공제제도(Salary reduction arrangement)에 납입한 선택적 이연의 합계액에 적용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에 대하여 매칭 연금 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을 추가적으로 출연하여야 함⁹¹⁾

89) 선택적 이연은 401(k) plan이외에, The Thrift Savings Plan for Federal Employees, Salary Reductio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ARSEP), 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SIMPLE plans), Tax-sheltered Annuity Plans(403(b)plans), Section 501(c)(18)(D) plans, Section 457 plans에 결합될 수 있음

90) IRC section 401(a)(17).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금 부담금(salary reduction contribution)의 전체 한도임

- 선택적 이연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단, 총급여액의 1% 한도) 또는 선택적 이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총급여액의 1~6% 한도)임
- 이외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 여부와 상관없이 총급여의 3%를 한도로 연금 부담금(Nonelective contribution)을 불입할 수 있음

(나)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IRA

- SEP IRA의 총적립한도액은 총급여(최대 260,000달러)의 25% 또는 52,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고,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불입은 허용되지 않음
- 401(k)제도를 적용한 경우 SIMPLE IRA의 총적립한도와 사용자 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총급여의 3%(매칭 연금 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인 경우) 또는 총급여의 2%(비선택적 연금 부담금(non-elective contribution)인 경우)임⁹²⁾
 - 근로자 연금 부담금(급여공제 연금 부담금, Salary Reduction Contribution) 한도는 12,000달러임
 -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500달러를 한도로 추가 연금 부담금(Catch-up contribution)이 허용됨

91) IRS, Publication 560, p. 16

92) 비선택적 연금 부담금의 경우, 해당 사용자로부터 최소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에 한함

〈표 Ⅲ-7〉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 · 사용자 손금산입 한도

유형		연금 부담금 적립한도	손금산입 한도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3년 연속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기간 동안의 평균급여 100%와 205,000달러 중 적은 금액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정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 ¹⁾	통합 한도(사용자 + 근로자)	52,000 달러(50세 이상 57,500달러)와 총급여의 100% 중 적은 금액 ²⁾	총급여 25% + 선택적 이연액
	근로자	선택적 이연한도 : 17,500달러 (50세 이상 23,000달러) ³⁾	
SEP	사용자	52,000 달러와 총급여의 25% 중 적은 금액	총급여 25%
	근로자	해당사항 없음	
SIMPLE IRA 401(k)	사용자	매칭 연금 부담금: 총급여 3% 비선택적 연금 부담금: 총급여 2%	총급여 3%, 총급여 2%
	근로자	12,000 달러(50세 이상, 14,500 달러) ⁴⁾	

주: 1) 이익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금전구입제도 각각 적용됨

2) 총급여는 260,000달러(2014년)에 한함

3)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5,500달러의 추가 연금 불입(Catch-up contribution)이 가능함

4)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2,500달러의 추가 연금 불입(Catch-up contribution)이 가능함

자료: IRS, Publication 560(2013), p.3

(3) 개인퇴직계좌(IRA) 연금 부담금 소득공제 한도⁹³⁾

□ Traditional IRA의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허용됨

-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한 연금 부담금 5,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500달러임)와 과세대상 소득(taxable compensation) 중 적은 금액임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퇴직연금제도(employer retirement plan)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득⁹⁴⁾ 및 신고지위(filing status)에 따라 개인연금제도에 납입한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짐

93) IRS, Publication 17(2013), pp. 120~122

94) 소득은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을 의미함

총소득(gross income)에서 항목별 공제 후 산출된 AGI에 비과세 이자소득, 사회보장 급여 등을 가감함

〈표 III-8〉 Traditional IRA 연금 부담금의 수정 조정 총소득별 소득공제 한도

신고지위		수정 조정 총소득 ¹⁾	소득공제 여부
퇴직 연금 제도 가입시	독신자, 세대주 신고	59,000달러 이하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59,000달러 초과~ 69,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 가능함
		69,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기혼(조인트), 적격 미망인 ²⁾	95,000달러 미만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95,000달러 이상~ 115,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 가능함
		115,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기혼 (개별신고)	10,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 가능함	
	10,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퇴직 연금 제도 미가입시	독신자, 세대주 신고	소득제한 없음	전액 소득공제가능함
	기혼(조인트), 적격 미망인 ³⁾	소득제한 없음	전액 소득공제가능함
	기혼(조인트), 적격 미망인 ²⁾	178,000달러 미만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178,000달러 이상~ 188,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 가능함
		188,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기혼(별도신고) (married filings separately)	10,000달러 미만	부분 소득공제가능함
10,000달러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주: 1) 수정 조정 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odified AGI)

2) 배우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함

3) 배우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미가입함

자료: IRS, Publication 17(2013)의 Table 17-1, Table 17-2를 재조정함

나) 운용수익 발생 단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완전적립금 범위 내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됨

다) 수령 단계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benefits) 관련 과세규정은 지급형태와 지급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연금(annuity)으로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시금(lump-sum)의 형태로 지급함
 - 수령하는 급여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대상 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표 Ⅲ-9〉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율(2014년)

(단위: 달러, %)

단독신고		부부합산, 적격미망인		세대주신고		세율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0	9,075	0	18,150	0	12,950	10
9,076	36,900	18,151	73,800	12,951	49,400	15
36,901	89,350	73,801	148,850	49,401	127,550	25
89,351	186,350	148,851	226,850	127,551	206,600	28
186,351	405,100	226,851	405,100	206,601	405,100	33
405,101	406,750	405,100	457,600	405,100	432,200	35
406,751	-	457,601	-	432,201		39.6

자료: IRS

(1) 연금수령시

- 연금 급여에서 과세제외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원금을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대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함

(가) 일반법(General Method)⁹⁵⁾

- 연금(annuity)은 연금개시일(annuity starting date)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그 지급액의 금액이 정해짐

95) Code Sec. 72.

- 세후소득으로 납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순투자액 상당액인 원금(cost)으로 보고 연금 급여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함
 - 예를 들어, 근로자 연금 부담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액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적립금 상당액을 공제한 부분을 과세소득에 포함함⁹⁶⁾

- 순투자 금액인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제외비율(exclusion ratio)을 이용함
 - 과세제외비율은 예상수익(Expected Return under the contract) 대비 투자금액(investment in the contract)으로 정의됨
 - 예상수익은 연금 계약상 수령하기로 한 예상기간 동안의 총연금수령액이고, 투자금액은 세후 연금 부담금 적립금인 원금(cost)을 의미함
 - 이를 연금법(Annuity Rule)이라고 함

(나) 간편법(Simplified Method)

- 1996년 11월 19일 이후 개시되는 연금은 적격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 ① 75세 미만이거나 ② 최소 5년 미만의 급여 지급을 보증(guaranteed payment)하는 경우에는 간편법을 적용하여야 함
 - 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편법에 의하여 원금을 계산하고 비적격연금제도인 경우에는 일반법에 의함
 - 단, 근로자가 75세 이상으로 최소 5년 이상 급여지급을 보장하는 적격연금제도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급여는 일반법을 적용함

- 간편법은 순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여 연금 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함⁹⁷⁾

96) 만일 사용자 부담금중 납입단계시 과세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역시 원금으로 봄

97) IRC Code Sec. 72(d), 72(e)(2)

- 과세제외금액은 ① 투자금액(investment in the contract)에서 ② 예상연금수령횟수(expected number of annuity payment)로 나눈 금액임
- ① 투자금액은 세후소득으로 납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으로서 근로자의 순투자액 상당액인 원금(cost)임
- ② 예상 연금수령 횟수는 연금 가입자의 나이에 기초하여 산출됨

(2) 비정기적인 급여 형태로 수령시

- 비정기적인 급여란 연금과 같은 정기급여 이외의 형태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의미함
- 1932년 2월 이전 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 요건의 일시금의 경우에는 10년 연분연승법(10-year tax option) 과세방법이나 20%의 자본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1932년 2월 이후 출생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비정기적인 급여 과세제도는 수령시점, 적격연금제도 여부, 특정 지급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⁹⁸⁾
 - 과거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한 5년 기준 연분연승법 과세방법이 적용되었으나 2001년에 폐지됨
- 연금개시일 이전 세제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지급액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산정함
 -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한 다음 과세대상 금액을 구하며, 과세제외금액은 비정기적 급여 수령액에서 연금계정 잔고(Account balance)에서 연금 부담금 적립금인 원금(cost)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text{과세제외금액} = \text{비정기 급여 총수령액} \times \frac{\text{원금}}{\text{연금계정 잔고}}$$

- 연금개시일 이전 비적격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지급액에서 과세대상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과세제외금액을 구함

98) IRS, Publication 575(2013)

- 과세대상 금액은 ① 비정기적 급여와 ② 비정기적 급여 수령 직전의 순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적립금의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임

(3) IRA 계좌 이전(Rollover)

-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내에 다른 적격연금이 나 IRA 계좌로 이전(rollover) 또는 이체(transfer)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급여액은 수령한 연도가 아닌 미래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⁹⁹⁾
- 이전이 허용되는 금액(eligible rollover distribution)은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모든 지급금임
 - 단, 종신 또는 10년 이상의 예상 생애주기(life expectancy)에 걸쳐 매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로자가 70.5세에 도달하여 최소 연금 급여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수령하거나, 401(k) 제도의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초과금을 돌려받는 경우 등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음

3. 독일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 독일 연금제도는 0층 기초보장제도, 1층은 공적연금, 2층 기업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분될 수 있음
 - 0층 기초보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는 노인과 장애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된 사회부조제도임
 - 1층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농민연금, 자영업자 직능연금 등 공적연금이

⁹⁹⁾ 이전은 일단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인출금을 수령한 후 다른 연금에 불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체는 인출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서 다른 적격연금제도로 바로 옮기는 것을 의미함. 본문에는 이체와 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이전(rollover)이라고 함

있고, 2층 기업연금(occupation pension)인 퇴직연금제도와 3층 개인연금이 있음

- 오랜 분리주의 전통과 자치운영 원칙으로 독일은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연금제도가 있었으나, 공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장애노령보험법에서 유래됨¹⁰⁰⁾
 - 개인연금제도는 생명보험의 형태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1974년 퇴직연금 개선을 위한 기업노령부양법을 통하여 기업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됨¹⁰¹⁾

[그림 Ⅲ-5]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2010년)

3층 부가 연금	임의가입 공적연금	개인 연금	인증제 개인연금				
			광부 철도 선원 연금	국가보조 기업연금	공공부문 기업연금	공무원 연금	
2층 보충 연금				기업연금			
1층 기본 연금	자영 업자 직능 연금	농민 연금	자유직 업자특 별연금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0층	기초보장제						
포괄 된 그룹	자영 업자	직능 조직	농민	예술가 등 일부자 영업자	광부	생산직·사무직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근로자		민간부문	공공부문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2), p. 183

- 2000년대부터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했던 독일은 낮은 출

100) 국민연금연구원(2013c), p. 170

101) 국민연금연구원(2012) p. 171

산율과 기대수명 연장에 대처하고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연금개혁을 진행함

- 2001년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초보장제도 및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함¹⁰²⁾¹⁰³⁾
 -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목표로 하여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이 일정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규제함
 - 2001년 당시 총액임금 대비 19.1%이던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20% 이내에, 2030년까지 22% 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정책목표로 설정됨
 - 자동재정안정화장치를 도입하여 인구·경제성장률과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연동하여, 인구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 연금 급여수준을 낮추게 됨
 - 노인과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함
 - 공적연금 축소에 따른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및 급여 수준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함
 - 공적연금 당연 가입자를 대상으로 리스터 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지원을 위한 아이헬 연금제도를 도입함
 - 임금전환방식을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 연금 부담금 납입을 허용함

- 2007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12년부터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
 - 1964년 이후에 출생한 근로자의 공적연금 급여 지급 개시연령은 67세임
 - 단, 2029년 이후에도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65세를 상한선으로 적용함

- 2012년 3월 22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노후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함¹⁰⁴⁾

102) 권혁창·김평강(2013), p. 92

103) 이태호·김원식·김재현·신성환(2011), p. 154

104) 김영미(2012a), p. 92

- 법정연금 가입의무를 모든 자영업자에게 확대함
 - 단, 연금수급연령에 근접한 시기(58세 이상)에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매월 400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들은 제외됨
- 연금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며, 상속, 양도, 대여, 담보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음

나.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

- 독일 국민연금의 재원조달은 부과방식으로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됨
 - 국민연금 전체 수입에서 정부보조금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 18~27%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 25%임
 -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와 환경세 수입의 일정 부분이 보조금으로 이전됨
- 독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2013년 현재 18.9%이며,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필요 보험료율은 2030년에도 법률로 정한 22%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함¹⁰⁵⁾
 -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함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9.45%씩 부담함
- 연금 부담금 부과소득의 하한(전 가입자 평균소득의 1/6)과 상한소득(평균소득의 2배)은 매년 소득상승률에 연동됨
 - 2014년부터 연금 부담금 부과 상한소득(Beitragsbemessungsgrenze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RV-BBG)은 71,400유로임

105) 국민연금연구원(2012), p. 204

〈표 Ⅲ-10〉 독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이(사무직 및 생산자 근로자 연금)

(단위: %)

연도	보험료율	연도	보험료율
1957~1967	14.0	1993	17.5
1968	15.0	1994	19.2
1969	16.0	1995	18.6
1970~1972	17.0	1996	19.2
1973~1980	18.0	1997-1999(1.1-3.31)	20.3
1981	18.5	1999(4.1)	19.5
1982~1983(8.31)	18.0	2000	19.3
1983(9.1)~1984	18.5	2001-2002	19.1
1985	18.7	2003	19.5
1985(6.1)~1986	19.2	2011	19.9
1987~1991(3.31)	18.7	2012	19.6
1991(4.1)~1992	17.7	2013	18.9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12 재인용, 국민연금연구원(2012), p. 204, 〈표 15〉 인용, KPMG, German Tax Card 2013

-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가입기간 동안의 개인별 소득점수, 연금지급률, 연금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됨
 - 현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현물급여로 장애인재활서비스와 연금수급자 질병보험료 일부 납부보조가 있음

2) 퇴직연금제도

가)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의 약속입¹⁰⁶⁾
 - 사용자는 노동계약형태의 합의로 근로자에게 약속한 시점에 확정된 조건이 만족되면 퇴직연금 급여를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됨
 - 중도인출, 담보사용, 제3자 양도는 노령, 사망, 질병 등의 법적인 경우 이외에는 금지

106) 이태호 외 (2011), p. 143

되며, 상속이 불가능하며 최소 60세 이상되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급여 제공에 대한 약속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대한 중요한 전제 조건임¹⁰⁷⁾

□ 독일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됨¹⁰⁸⁾

- 독일 퇴직연금제도는 대부분 확정급여형 또는 변형확정급여형으로 구성됨¹⁰⁹⁾
- 이러한 원인은 투자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순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독일 퇴직연금법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임
- 확정급여형 중심의 시장과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퇴직연금 급여보장제도로 역할을 수행함¹¹⁰⁾

□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관리를 직접 또는 내부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인 직접보장, 지원금고와 외부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으로 구분됨¹¹¹⁾

- 리스터연금제도나 아이헬연금제도는 외부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함

□ 퇴직연금 급여의 지급방식은 부분적인 일시금 및 연금 방식으로 지급됨

- 전액 일시금 지급은 법으로 금지되며, 연금기금의 경우 오직 연금수령의 방식으로만 지급됨
- 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가 포함됨
- 가입기간이 사용주에 의해 자유롭게 조정(5년 최저 가입기간)되며, 공적연금의 통상 연금 급여의 개시연령은 만 67세임

107) 김영미(2012b), p. 157

108) 김영미(2012b), p. 155

109) 이태호외(2011), p. 145

110) 이태호외(2011), p. 179

111) 이태호 외(2011), pp. 145~153

- 조기노령연금이 허용되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¹¹²⁾
 - ① 공적연금에서 조기노령연금은 부분적인 연금이 아니라 전체 연금으로 청구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완전히 퇴직하여야 함
 - ② 연금급여계약에서 규정된 급여조건(특히 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③ 근로자는 사용자 및 퇴직연금기관에 대하여 기업의 노령연금 조기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Leistungszusage)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급여의 수준이 임금 및 근로기간에 연계되어 확정됨
- 변형확정급여형(Beitragsorientierte Leistungszusage)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부담금의 수준이 우선 확정되고 그에 따라 연금급여의 금액이 산정됨
 - 확정급여형과 달리 연금 급여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그 연금 급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형태로 사용자 부담부분이 확정되어 근로자에게 고시됨

(가) 직접보장

- 직접보장(Direktzusagen)은 충당금 형식의 사내적립방식으로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와 유사함
 - 확정급여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급여 청구권을 가지며, 연금급여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내부적으로 조달함
 - 단, 사용자가 지불능력 상실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인 연금보장협회(Pensions-Sicherungs-Verein Versicherungsverein auf Gegenseitigkeit, PSVaG)에서 연금 급여가 지급됨¹¹³⁾

112) 김영미(2012b)

113) 김대환 · 류진식(2013), p. 54

(나) 지원금고

- 지원금고(Unterstuetzungskasse)는 외부 독립기관인 지원금고에서 사용자 연금 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함
 -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며, 사용자는 지원금고의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나, 근로자는 지원금고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청구권이 없음
 - 사용자의 지불능력 상실시, PSVaG에서 퇴직급여의 지급보장을 담당함

(다) 직접보험

- 직접보험(Direktversicherung)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 사용자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종업원을 위해 민영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 근로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되며, 근로자 및 그 유족은 보험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게 됨
 - 리스터 연금제도, 아이헬 연금제도, 임금전환 방식이 적용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변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모두 가능함
 - 생명보험회사 등이 급여지급 의무를 지게 되므로 PSVaG에 의한 지급보장이 필요하지 않음

(라) 연금금고

- 연금금고(Pensionskasse)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연금금고에 등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연금금고에 대해서 연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연금금고는 급여지급에 대

연금보장협회는 1975년 직접지원, 지원금고, 연금펀드와 같은 사적 퇴직연금의 지급보증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됨. PSVaG는 상호회사 형태의 민간기관으로서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후,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미적립된 연금부채를 보험금으로 보전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신연금을 대체 구입함.

한 책임을 부담함

- 리스터 연금제도, 아이헬 연금제도, 임금전환 방식이 적용됨
- 보험감독법에 의한 보험감독을 받게 되므로 PSVaG에 의한 지급보장이 필요하지 않음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최저급여보장 확정기여형(Beitragszusage mit Mindestleistung)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됨
 - 그러나 퇴직시점에서 최저보장이율을 기준으로 근로자 개인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는 사용자의 최저보장기능이 있음
 - 사용자는 외부 퇴직연금기관에 납입한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최저급여를 정한 기여금약속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운용결과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2001년 기업연금법 개혁시 도입되어 연금금고, 연금기금, 직접보험에만 적용이 가능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연금기금(Pensionsfonds)이 있음
 - 연금기금(Pensionsfonds)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외부기관을 통하여 연금 급여가 충신토록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되며 근로자는 연금기금에 대하여 연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됨
 - 공적연금 개혁 이후 2002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재원조달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함
 - 직접보험이나 연금금고와 달리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가능하여 수익과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일시금 형태의 급여지급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연금형태의 지급방식만 허용됨
 - 리스터 연금제도, 아이헬 연금제도, 임금전환 방식이 적용됨

-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방식이 모두 가능함
- 급여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PSVaG에 의한 지급보증이 요구됨

나)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 2001년 연금개혁 당시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리스터연금제도, 아이헬연금제도, 임금전환을 도입하였고, 2005년 연금개혁 당시 뤼름연금제도를 도입함

(1) 리스터연금제도(Riester Rente)¹¹⁴⁾

-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된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용대상이었음
 -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리스터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와 결합하여 적용됨
 -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산출하는 연금가치 산정에 반영됨¹¹⁵⁾
 - 보조금이 증가할수록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삭감됨
- 리스터연금제도는 인증제 연금제도로 가입자가 인증기준을 통과한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됨
 - 보조금지급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급여지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같이 도입되어야 하는 등의 인증기준이 있음¹¹⁶⁾

114) 이태호 외(2011), pp. 143~144

115) 이태호 외(2011), p. 177

116) 국민연금연구원(2012), p. 217

인증기준은 ① 보험금 지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60세 이전에는 지급이 개시되어서는 안됨 ② 연금급여는 최소한 납입한 보험료만큼의 액수를 보장하여야 함 ③ 연금급여는 종신연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금급여의 지급 개시 시기에 축적된 자본의 30%로 제한됨 ④ 보험회사의 운영, 행정비용은 5년 동안에 걸쳐 환수해

- 리스터리연금제도는 보조금(subsidies)지급과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이 있음
 - 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됨¹¹⁷⁾
 - 보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며,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부분만 납입하게 됨
 - 2008년 이후부터 기본보조금은 154유로(부부인 경우 2배인 308유로), 자녀보조금은 자녀 1인당 185유로(2008년 이후 출생의 경우 300유로)를 받음
 - 보조금의 한도는 1,575유로(2006/2007년)임
 - 가입자 본인은 최소 연금 부담금인 60유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총임금의 4%까지 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¹¹⁸⁾
 - 연금 부담금의 납입액이 이보다 낮아지면 수령하는 보조금의 액수도 감소함
 - 연금 부담금은 일정한도(2008년 이후 2,100유로)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됨

- 중도 해약의 경우에 보조금은 전액 회수되며, 수익금과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됨

- 고소득층은 소득공제와 보조금 지원의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고소득층에 의한 이중혜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전체 소득세 감면액 중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환급함¹¹⁹⁾
 - 그 결과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만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이라는 리스터리연금제도의 목적과 달리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¹²⁰⁾

야 함 ⑥ 계약을 일시정지, 해약,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

117) 국민연금연구원(2012), p.218

118) 국민연금연구원(2012), p.175

119) 이태호 외(2011), p.162

예를 들어, <표 Ⅲ-11>에서 전년도 표준소득이 25,000유로인 무자녀 독신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액이 295유로라고 한다면, 기본보조금 154유로를 차감한 141유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표 Ⅲ-11〉 리스터연금제도의 보조금 및 보험료(2008년)

(단위: 유로, %)

구분	전년도 표준소득	기본 보조금	자녀수당	본인 부담금	전체 연금 부담금	추가 세금혜택	지원금 비중
2명의 자녀 가진 부부	5,000	308	370	60	738	-	92
	15,000	308	370	60	738	-	92
	25,000	308	370	322	1,000	-	68
	40,000	308	370	922	160	-	42
	50,000	308	370	1,322	2,000	-	34
	75,000	308	370	1,422	2,100	-	33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
무자녀 독신	5,000	154	-	60	204	-	75
	15,000	154	-	446	600	-	26
	25,000	154	-	846	1,000	141	30
	40,000	154	-	1,446	1,600	432	37
	50,000	154	-	1,846	2,000	672	41
	75,000	154	-	1,946	2,100	777	44
	100,000	154	-	1,946	2,100	777	44

자료: 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2005:23), 국민연금연구원(2012), p 219 재인용

(2) 아이헬(Eichelforderung) 연금제도

- 아이헬 연금제도는 소득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혜택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사회보험료 면제혜택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되었으나, 2007년에 사회보험료 면제혜택이 연장됨

- 아이헬지원제도는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 방식의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과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일정한도에서 소득공제하여 과세를 이연함¹²¹⁾
 -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임

120) 국민연금연구원(2012), p. 176

121) 독일 소득세법 제3조 63항

- 단, 직접약속과 지원금고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의 사업상 비용으로 근로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음
- 임금전환에 의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함

□ 리스터연금제도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3) 임금전환방식(Entgeltumwandlung)¹²²⁾

-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장래 임금의 일부분을 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이나 이미 수령한 임금에서 납입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를 “임금전환방식”이라고 함
 - 후자는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서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 본인의 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임
 -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해 고지되는 연금급여약속과 구분되는 근로자의 자기기여금약속(Eigenbeitragszuge)이 필요함¹²³⁾
 - 자기기여금약속은 임금에서 연금 부담금이 납입될 것 이외에 사용자의 연금급여 약속 외에도 이러한 연금 부담금에서의 급여를 포함할 것을 전제로 함
 - 급여 지급불능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비록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급여지급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임금전환방식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중에서 일부를 퇴직연금제도에 불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임금전환방식은 근로자의 장래 임금청구권이 동일한 가치의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 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장래 임금에 대한 포기를 통하여 형성된 퇴직연금을 의미함¹²⁴⁾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장래 이행되는 임금청구권의 감액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122) 김영미(2012b), p. 175

123) 기업연금법 제1조 제2항 제4호.

124) 기업연금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필요함

- 임금전환으로 불입되는 금액은 법정연금보험에서 정하는 연금 부담금 부과 상한소득 (2014년 71,400유로)의 최대 4%로 제한됨(기업연금법 제1a조 제1항 제1문)
 - 근로자의 임금전환방식 적용 청구에 의하여 사용자는 직접보험의 가입 또는 리스터 연금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생김¹²⁵⁾

(4) 뤼롭연금제도(Rürup-Rente)¹²⁶⁾

- 뤼롭연금제도는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적격 개인연금제도로 2005년 노후재산법(AltEinkG)에 의해 도입됨
 -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층 공적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로 뤼롭연금은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독일 자영업자들은 1층 공적연금과 2층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2005년 이후 개인연금보험이나 저축성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배제함에 따라 개인연금에 대한 유일한 세제혜택은 뤼롭연금제도에만 적용됨
 - 종신연금으로만 지급되며 60세 이후 연금지급이 개시됨
 - 2012년부터 체결되는 연금계약의 경우, 62세 이후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됨¹²⁷⁾
 - 뤼롭연금계약의 수급권은 법률상 상속, 양도 및 대여가 금지됨¹²⁸⁾
- 뤼롭연금계약에 불입한 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연금급여는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됨¹²⁹⁾

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p. 203

126) 김영미(2012a), pp. 89~91

127) 연금지급연령조정법(RV-Altersgrenzeanpassungsgesetz) 제10조

128) 독일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b

129) 독일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b,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

1) 공적연금 과세제도

- 2005년 이전에는 공적연금에 불입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으로 구성된 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만이 과세대상이었음¹³⁰⁾
- 2005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과 세계적격 퇴직연금 과세제도는 EET(면세-면세-과세) 방식을 적용함¹³¹⁾
 - 납입 단계에서의 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적립금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됨
 -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단계에서는 과세됨
- 공적연금 과세제도는 퇴직연금의 과세제도와 유사하여 “2) 퇴직연금 과세제도”에서 후술함

2) 퇴직연금 과세제도

가) 납입 단계

- 공적연금에 불입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고용관계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에 지급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¹³²⁾
 - 단, 직접계약, 지원금고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업상 비용이며,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지급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님

130) Röβler, Nicolas(2009), p. 4

131) 이태호외(2011), p. 153

132) 독일 소득세법 제19조 1항 2호

-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에 납입한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최대 RV-BBG의 4%(2014년은 2,856유로)를 한도로 소득공제됨¹³³⁾
 - 단, 2005년 이후 체결된 연금계약에 한하며, 최대 1,800유로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함
 - 2005년 이전 계약된 직접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최대 연 2,148유로)에 대해 20%의 단일세율로 과세됨¹³⁴⁾
 -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구성함

-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함
 - 특별소득공제 대상 연금 부담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불입한 연금 부담금을 모두 포함함
 - 단, 비과세소득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연금 부담금은 제외함
 - 만일 사용자 연금 부담금이 소득공제 한도인 RV-BBG의 4%를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분기별 중간예납신고 목적으로 연금 부담금의 일시금 소득공제(Lump-sum deduction)가 허용됨¹³⁵⁾¹³⁶⁾
 - 공적연금(statuary pension system), 뮌헨연금제도에 불입한 연금 부담금으로 사용자 연금 부담금 중 비과세소득인 부분은 제외함
 -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소득공제비율은 매년 일정하게 인상되며 2014년 실제 연금 부담금의 78%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 실제 연금 부담금의 금액은 최대 20,000유로(부부합산신고의 경우 40,000유로)가 한도임
 - 2025년까지는 매년 2%씩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율이 인상되어 소득공제비율은

133) 독일 소득세법 제3조 제63호

134) 독일 소득세법 제40b조

135)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11), p. 72

136) Perdelwitz, Andreas(2013), p. 9. 독일은 분기별로 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하며, 납부된 세액은 확정세무신고시 기납부세금으로 세액공제됨

연금 부담금의 100%가 됨

나) 운용수익 발생 단계

-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됨

다) 수령 단계

(1) 연금수령¹³⁷⁾

- 공적연금, 리스터연금제도,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 등 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¹³⁸⁾
 -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소득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에 한함¹³⁹⁾
- 그러나 과세제도가 전환된 2005년부터 연금 급여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과세비율을 인상하여 과세소득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 매년 연금과세비율(taxation rate of pension)은 2005년에는 50%에서 출발하여 2006년부터 매년 2%씩, 2021년부터는 매년 1%씩 과세비율을 인상하여 2040년부터는 연금수령액의 100%를 과세하게 됨
 - 연금과세비율이란 연금 급여에서 과세되는 부분을 의미함
 - 연금급여가 개시되는 연도에 따라 과세비율은 정해짐
 - 2005년과 그 이전에 연금 급여가 개시된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의 50%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봄
- 직접계약, 지원금고에서 수령하는 연금 급여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됨¹⁴⁰⁾

137) Perdelwitz, Andreas(2013)

138)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워룸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도 동일하게 과세됨

139) 독일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소득세법 제3조 제56호, 제63호, 제66호

140) 독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수령액에 대하여 27.2%(2013년)의 근로소득 공제(tax free allowance)를 적용함
 - 단, 수령액의 금액은 2,040유로를 한도로 함
- 63세 이상인 경우에는 612유로(2013년)의 추가공제가 적용됨

〈표 Ⅲ-12〉 연도별 기타소득 과세비율

(단위: %)

연금급여 개시연도	과세비율	연금급여 개시연도	과세비율	연금급여 개시연도	과세비율
2005	50	2017	74	2029	89
2006	52	2018	76	2030	90
2007	54	2019	78	2031	91
2008	56	2020	80	2032	92
2009	58	2021	81	2033	93
2010	60	2022	82	2034	94
2011	62	2023	83	2035	95
2012	64	2024	84	2036	96
2013	66	2025	85	2037	97
2014	68	2026	86	2038	98
2015	70	2027	87	2039	99
2016	72	2028	88	2040	100

자료: 독일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a) aa)

〈표 Ⅲ-13〉 연도별 근로소득(연금) 소득공제비율

(단위: %, 유로)

연도	소득공제		추가 공제	연도	소득공제		추가 공제	연도	소득공제		추가 공제
	비율	한도			비율	한도			비율	한도	
2005	40	3000	900	2017	20.8	1560	468	2029	8.8	660	198
2006	38.4	2880	864	2018	19.2	1440	432	2030	8.0	600	180
2007	36.8	2760	828	2019	17.6	1320	396	2031	7.2	540	162
2008	35.2	2640	792	2020	16.0	1200	360	2032	6.4	480	144
2009	33.6	2520	756	2021	15.2	1140	342	2033	5.6	420	126
2010	32.0	2400	720	2022	14.4	1080	324	2034	4.8	360	108
2011	30.4	2280	684	2023	13.6	1020	306	2035	4.0	300	90
2012	28.8	2160	648	2024	12.8	960	288	2036	3.2	240	72
2013	27.2	2040	612	2025	12.0	900	270	2037	2.4	180	54
2014	25.6	1920	576	2026	11.2	840	252	2038	1.6	120	36
2015	24.0	1800	540	2027	10.4	780	234	2039	0.8	60	18
2016	22.4	1680	504	2028	9.6	720	216	2040	0.0	0	0

자료: 독일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3호

(2) 일시금 수령

-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본소득(income from capital investment)으로 과세됨¹⁴¹⁾
 - 단, 경과규정으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연금계약에서 수령하는 일시금의 경우 비과세되며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과세됨
 - 25%의 단일세율(5.5%의 부가세 별도)이 적용됨
 - 자본소득 공제의 적용(연 801유로, 기혼인 경우 1,602유로)이 가능함

- 과세대상소득이 8,354유로(부부합산인 경우 16,708유로)인 경우에는 면세점으로 과세되지 않음(〈표 Ⅲ-12〉 참조)

〈표 Ⅲ-14〉 면세점과 개인소득세율(2014년)

(단위: 유로)

과세대상소득(미혼)		과세대상소득(부부합산)		세율
이상	이하	이상	이하	
0	8,354	0	16,708	0
8,355	52,881	16,709	105,762	14%
52,882	250,730	105,763	501,560	42%
250,731		501,461		45%

주: 구 동독 재건을 위한 부가세 5.5% 별도임
 자료: PWC(2014).

4. 호주

가. 노후소득보장체계

- 호주의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1층 노령연금(age pension), 2층 강제가

141) Perdelwitz, Andreas(2013), p. 5

입 퇴직연금, 3층 (자발적) 개인연금저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1층은 노령연금으로 일반 조세에서 100%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형임
- 2층은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연금임
- 3층은 개인연금저축으로 퇴직연금 임의적립과 개인저축으로 구성됨

[그림 Ⅲ-6]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자발적) 개인연금저축(임의가입)	퇴직연금 임의적립, 개인저축
2층	강제가입 퇴직연금(강제가입 확정기여형)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의무적립
1층	노령연금(공공부조)	일반조세로 충당

□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약 100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3층 구조 체계로 자리잡음

- 노령연금은 1900년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0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급여로 지급되기 시작하였음¹⁴²⁾
- 강제가입 퇴직연금(Superannuation)은 1892년 뉴사우스웨일즈은행이 근로자를 위해 처음 도입한 이후, 1986년 호주 정부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만들어진 생산성보상연금(Productivity Award Superannuation) 제도를 시행하다, 1992년 강제가입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음
 - 생산성보상연금은 해당연도 임금 인상분 중 3%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으로 강제 적립하게 한 제도로 전문직, 관리직, 공공부문(공무원), 금융부문 등으로 가입이 확대되어 1991년까지 70%의 가입률을 기록함
 - 1992년 퇴직연금보장법(Superannuation Guarantee Act 1992)이 제정되면서 호주 정부는 강제가입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와 같은 연금체계의 틀을 구축하게 되었음

142) 국민연금연구원(2013), p. 100

〈표 Ⅲ-15〉 호주의 퇴직연금 연혁

시기	내용		
1892년	뉴사우스웨일즈은행 퇴직연금 도입		
1980년대 후반	생산성보상연금 시행		
1992년	퇴직연금보장법 제정		
1990년대 초반	가입자의 투자선택권 도입		
1996년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을 선택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줄 것을 제안		
2003년	금융부문개혁법(Financial Sector Reform Act) 도입		
2004년	수탁자 자격제도(Licensing) 도입 및 공시규정 강화 퇴직연금 기금 선택 관련 법률 통과		
2005년	7월부터 퇴직연금 기금 선택 가능		
2007년	퇴직연금 개혁		
	항목	과거 내용	개정 내용
	연금수령액 비과세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의 전신인 생산성보상연금이 도입된 1983년 7월 이전 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경우 5% 세율 적용 ○ 1983년 7월 이후 근무에 대한 급여는 연령별 기준 세율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미만: 20% - 55세 이상: 129,751호주 달러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15%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7월 이전 근무에 대한 급여는 비과세 ○ 1983년 7월 이후 근무에 대한 급여는 수령대상자의 나이가 60세를 넘었을 경우 전액 비과세(60세 미만의 경우 과거와 동일)
	연금수령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비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령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령 시기는 가입자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후 직업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음 - 65세 이후에 퇴직연금기금에 추가납부 가능(직장 있으면 고용주는 매년 임금의 9%를 퇴직연금 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기여금 세제혜택	연령대별로 최저세율(15%)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	근로자는 기여금에 대해 연간 5만달러까지 최저세율(초과시 31.5%)을 적용받고, 기업은 납부금액 전액을 손비인정 받음(2014년)	

자료: 한국채권연구원(2011), p. 31, p. 37 인용 및 수정

- 호주는 OECD 방식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1층에 공공부조 형태의 기초연금을 설정하고, 2층에는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호주는 1층에 노령연금과 2층에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나. 공적연금제도와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1) 공적연금제도(노령연금)¹⁴³⁾

- 호주의 공적연금제도인 노령연금은 1908년 도입되어 재원의 100%가 연방정부의 재정(조세)으로 충당하는 공공부조형 연금제도임
 - 1908년 디킨(Deakin) 정부에 의해 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노령연금 제정법의 기본 원칙 등은 현재까지 동일하며, 소급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 등을 조정하였음¹⁴⁴⁾

가) 수급요건

- 노령연금은 거주 및 소득과 자산조사(income and assets test)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됨
-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호주 거주자’이어야 하며,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 통상 호주 내에 사실상의 주거지를 두고 생활하는 경우 또는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내는 근로자인 경우를 의미함¹⁴⁵⁾
 -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거주자(resident or resident of Australia)로 간주(regard)함¹⁴⁶⁾

143)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age-pension>

144) 해외 공·사 연금제도(2013), p. 126

145)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24302.htm>

- 호주에 살고 있는 자는 호주에 주소(domicile)가 있는 사람이며, 실질적으로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호주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자는 거주자임
- 퇴직연금법(Superannuation Act 1990 및 Superannuation Act 1976)을 적용받는 자임

□ 노령연금의 2014년 수급 개시 연령은 남성, 여성 모두 65세임

- 현재 1952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의 경우 남녀 모두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임
-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앞으로 2년마다 6개월씩 늘어나 2017년 7월 1일부터 남녀 모두 65세에서 65.5세로 상향조정되며, 2023년에는 67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함

〈표 Ⅲ-16〉 호주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단위: 세)

출생연도	여성	남성
~1935년 7월 1일	60	65
1935년 7월 1일~1936년 12월 31일	60.5	65
1937년 1월 1일~1938년 6월 30일	61	65
1938년 7월 1일~1939년 12월 31일	61.5	65
1940년 1월 1일~1941년 6월 30일	62	65
1941년 7월 1일~1942년 12월 31일	62.5	65
1943년 1월 1일~1944년 6월 30일	63	65
1944년 7월 1일~1945년 12월 31일	63.5	65
1946년 1월 1일~1947년 6월 30일	64	65
1947년 7월 1일~1948년 12월 31일	64.5	65
1949년 1월 1일~1952년 6월 30일	65	65
1952년 7월 1일~1953년 12월 31일	65.5	65.5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 30일	66	66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 31일	66.5	66.5
1957년 1월 1일 이후~	67	67

자료: 호주 복지부(<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age-pension>)

- 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조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시각장애인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예외)
- 소득조사 기준소득은 가구상태(독신, 부부)에 따라 다르며 2013년 독신가구가 노령연금 완전수급자격인 경우에는 2주당 소득이 156호주달러 미만이어야 함
 -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호주달러당 노령연금수급액이 0.5호주달러씩 감액됨
 - 독신인 경우 2주당 1,810.2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아님

〈표 Ⅲ-17〉 호주의 노령연금 소득조사

(단위: 호주달러)

가구상태	완전 연금 수급자격 (2013년 7월1일~2014년 6월 30일)		부분연금 수급자격 (Cut-off points)
	2주당	연 소득(26회)	2주당
독신	156	4,056	1,810.20
부부	276	7,176	2,769.60
부부(질병으로 인한 별거)	276	7,176	3,584.40

자료: 호주 복지부(<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age-pension>)

- 노령연금을 위해 재산조사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재산은 가구상태와 자가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짐
- 2014년 현재 자가주택을 소유한 독신이 완전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196,750호주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1,000호주달러당 노령연금이 1.5호주달러씩 감액됨
 - 재산이 748,250호주달러를 초과하면 노령연금 수급할 수 없음
 -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는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비해 재산기준이 상향 조정됨

〈표 Ⅲ-18〉 호주의 노령연금 재산조사

(단위: 호주달러)

가구상태		자가 주택 소유	자가 주택 비소유
완전연금 수급자격	독신	196,750	339,250
	부부(동거)	279,000	421,500
	부부(질병으로 인한 별거)	279,000	421,500
	1명만 수급요건 충족	279,000	421,500
부분연금 수급자격	독신	748,250	890,750
	부부(동거)	1,10,500	1,253,000
	부부(질병으로 인한 별거)	1382,000	1,524,500
	1명만 수급요건 충족	1,10,500	1,253,000

자료: 호주 복지부(<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age-pension>)

나) 급여수준

-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금수급자생계지수(Pensioner and Beneficiary Living Cost Index) 중에서 더 큰 수치에 의해 매년 3월과 9월에 조정되어 급여에 연동되고 있음
 - 1997년 노령연금 수급액이 법제화되고 연금 완전수급액은 독신 수급자 기준으로 남성 평균임금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였음¹⁴⁷⁾
- 2014년 현재 노령연금의 완전수급액은 독신의 경우 751.70호주달러(2주당), 부부의 경우 566.60호주달러(2주당, 부부 각각)를 수령하고 있음

〈표 Ⅲ-19〉 노령연금의 완전수급액(maximum age pension rates)

(단위: 호주달러)

	가족상태		
	독신	부부 각각	부부 각각 (질병으로 인한 별거)
연금수급액(2주당)	751.70	566.60	751.70
에너지 부가급여(Clean Energy Supplement) ¹⁾	13.70	10.30	13.70

주: 1) 에너지 부가급여는 에너지 보조 지원금 형태의 부가급여임

자료: 호주 복지부(<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age-pension>)

147) 국민연금연구원(2013), p. 135

2)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가) 개요

- 퇴직연금이 강제화됨에 따라 적용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199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의 의무적립금은 통상임금(ordinary earnings)의 6%로 인상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8%, 2002년 7월 1일부터 9%로 의무적립 기여율이 상향조정되었음
- 2014년 7월부터 고용주의 의무적립금 수준은 9.25%로 인상되며, 2019년에 12%로 인상될 예정임¹⁴⁸⁾

〈표 Ⅲ-20〉 퇴직연금의 기여율 연혁

(단위: %)

연도	1992~1995	1995~1998	1998~2000	2000~2002	2002~2012	2019
기여율	5	6	7	8	9	12(예정)

- 모든 사용자(일부 제한 규정 제외)가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퇴직연금 가입대상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임¹⁴⁹⁾
 - 정규직, 비정규직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직연금법에 따라 가입대상자에 해당됨
 - 근로자의 범위는 퇴직연금 가입 목적에 따라 확대 해석되어 일부 예술가, 체육인 등이 포함됨
 - 세전급여가 450호주달러 미만, 70세 이상인 자, 주당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18세 미만인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자영업자도 보험료는 강제되지 않지만 조세혜택을 주어서 자영업자에게도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148) <http://www.ato.gov.au/Business/Employers-super/In-detail/FAQs/Super-reform---questions-and-answers-for-employers/>(호주 국세청)

149) <http://www.ato.gov.au/Non-profit/Workers-and-volunteers/In-detail/Employees,-volunteers---other-workers/Obligations-and-concessions/Super-guarantee---Tax-basics-for-non-profit-organisations/>

- 고용주가 퇴직연금기여금 미납시 정부가 우선납부 후 정부가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함(기여금납부 정부 보증)
 - 정부는 미납부 퇴직연금기여금을 국가 재원으로 납입한 후 미납한 기업에 기여금, 이자, 징수비용을 청구함

- 2014년 7월부터 고용주의 의무적립금 수준은 9.25%이며, 근로자의 추가적립이 가능함
 - 근로자의 추가적립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이 있음
 - 근로자의 추가적립금과 사용자의 의무적립금을 포함하여 연간 25,000호주달러까지 소득세 15%(최저세율)만을 부과하며, 운영수익은 연간 15만호주달러까지 15% 세율을 적용함(60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때에는 비과세함)¹⁵⁰⁾

-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 보전연령(preservation age)은 60세임
 - 사망, 영구적 장애, 재정적 궁핍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의 조기인출이 불가함
 - 60세 이후에도 은퇴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없고, 65세가 되어야 은퇴와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나) 가입 및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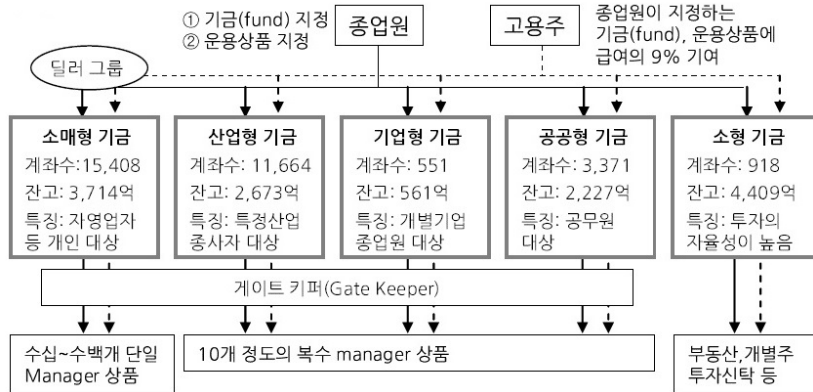
-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매월 최소 급여의 9.25%를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설립한 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업, 산업 및 금융기관이 설립한 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음
 - 2005년 7월부터 기금선택제를 통해 근로자가 선택가능한 기금의 종류는 크게 기업형, 산업형, 공공형, 소매형, 소형 기금이 있음

- 근로자는 딜러그룹(dealer group: 은행 등 금융기관에 속한 IFA로 기금을 근로자에게 소개함)을 통해 기금에 가입함¹⁵¹⁾

150) 자세한 내용은 '다. 연금제도 과제제도'에서 서술하였음

[그림 Ⅲ-7] 호주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기금의 운용형태

(단위: 천개, 억 호주달러)



주: 근로자는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나 은행 등 딜러그룹을 통해 기금에 가입하고, 해당기금은 컨설팅 회사인 게이트키퍼가 평가한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함
 자료: 금융투자협회(2012), P.13(호주 APRA 2012년 6월말 자료)

- 강제가입 퇴직연금 적립기금은 20~30년 이상 운영되는 초장기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산배분 중 주식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음¹⁵²⁾
 - 호주의 퇴직연금은 주로 확정기여방식(82%)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형기금(공무원 대상)이 확정기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강제가입 퇴직연금 기금은 호주 국내 주식에 26.5%, 해외주식 24.9%에 투자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예금 18%, 보험14% 등에 투자되고 있음

- 강제가입 퇴직연금은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CI: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호주 국세청이 퇴직연금을 규제 및 감독하고 있음¹⁵³⁾
 - 호주 건전성감독청은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를

151) 금융투자협회(2012), p. 13

152)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http://www.apra.gov.au/Super/Publications/Pages/annual-superannuation-publication.aspx>)

153) 국민연금연구원(2013), p. 150

제외한 거의 모든 기금의 수탁자는 건전성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증권투자위원회는 수탁자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과 근로자(가입자) 보호 책임이 있음
- 국세청은 소형기금 중 5인 미만의 자기관리기금에 대한 규제와 퇴직연금기금의 기여금과 급여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음

다) 정부지원

- 호주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저소득층(low-to-middle income earner)의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 co-contribution)를 시행하고 있음
 - 정부지원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 co-contribution)는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해 주는 제도임
- 정부지원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 co-contribution)는 비적격 기여금((Non-concessional (after-tax) contributions)을 불입하는 자에게 최대 500호주달러(불입액의 50%)까지 정부가 추가 납입해 주는 제도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¹⁵⁴⁾
 - 총소득이 48,516호주달러(2013~14년 기준) 이하인 자로, 총소득의 10% 이상은 근로소득이어야 함
 - 71세 미만인 호주 거주자로, 일시적 거주자는 제외함
- 정부지원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의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음
 - 고용주의 강제적립금 이외에 예를 들어, 비적격 기여금 1,000호주달러를 불입하는 소득 33,516호주달러 이하(2013~14년 기준)의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간 500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있음(〈표 Ⅲ-21〉 참조)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비적격 기여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 별다른 신청절차 필요없이 근로자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계좌에 ‘personal super contribution’ 항

154) 호주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기여금은 세제혜택이 있는 적격 기여금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 기여금으로 구분됨

목으로 입금하면 됨

- 국세청은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매년 6월에 개인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계좌에 정산해서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의 정부지원금을 입금함

〈표 Ⅲ-21〉 호주의 정부지원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

(단위: 호주달러)

소득기준	퇴직연금불입액(비적격 기여금)			
	1,000	800	500	200
	정부지원 금액			
33,516 이하	500	400	250	100
36,516	400	400	250	100
39,516	300	300	250	100
42,516	200	200	200	100
45,516	100	100	100	100
48,516 이상	0	0	0	0

자료: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Individuals/Super/Other-contributions/Government-super-contributions/>)

다. 강제가입 퇴직연금 과세제도¹⁵⁵⁾

- 호주의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TTE(과세-과세-면세) 형태이며, 연금수령시기에 따라 TEE(과세-면세-면세) 형태가 될 수도 있음
- 호주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기여금은 세제혜택이 있는 적격 기여금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 기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적격 기여금은 고용주의 최소 9.25% 의무적립금(Super guarantee)과 15%로 과세되는 근로자의 세전급여기여금(salary sacrifice)이 있음
 - 비적격 기여금은 세후소득(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후 소득)에 대한 임의적립금이며, 근로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급여에 대해 퇴직연금에 추가로 적립이 가능함

155) 호주의 공적연금은 노령연금 등 100% 조세로 충당되는 공적부조 형태로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의 과세제도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음

〈표 Ⅲ-22〉 강제가입 퇴직연금 기여금의 과세제도

	기여금 주체	기여한도	기여시 세율	운용수익	수령시 세율
적격 기여금	고용주	연간 25,000호주달러(2013-14회계연도에 60세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35,000호주달러)	15%	15% (60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비과세)	60세 이상 수령시 비과세 (일시금과 연금 모두 적용)
	근로자	고용주 기여금 포함 연간 25,000호주달러 (2013~14회계연도에 60세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35,000호주달러)	15%		
비적격 기여금	근로자	150,000호주달러			

□ 호주의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단순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연봉이 100,000인 호주 근로자가 적격 기여금 최한도(25,000)로 퇴직연금에 저축한 후,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단위: 호주달러)
 - (기여) 회사기여금 9.25%(9,250) + 본인급여기여금(250,000-9,250=15,750)
 $25,000 \times 15\% = 3,750$ (본인 부담: 2,362.5)
 - (운용) 운용수익의 15% 과세(단, 60세 이후 연금수령시 비과세)
 - (수령) 60세 이후 연금수령시 비과세
 - *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다면, 본인기여금 15,750에 해당하는 2,362.5만 부담
- ② 퇴직연금이 아닌 저축을 하는 경우(15,750)
 - * $15,750 \times 37\%$ (소득세율) = 5,827.5 부담(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율 적용)
 - ∴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강제가입 퇴직연금을 통한 기여금이 일반적인 저축보다 세금우대 혜택이 있음

〈표 Ⅲ-23〉 호주의 개인소득세율(2013~14)

(단위: 호주달러)

과세소득	세율
0 ~ 18,200	0%
18,201 ~ 37,000	18,200 초과하는 금액의 19%
37,001 ~ 80,000	3,572 + 37,000 초과하는 금액의 32.5%
80,001 ~ 180,000	17,547 + 80,000 초과하는 금액의 37%
180,001 and over	54,547 + 180,000 초과하는 금액의 45%

자료: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

1) 납입 단계

- 고용주 부담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함
- 적격 기여금(Concessional (before-tax) contributions)은 15%로 과세하며, 소득세 납부 이후에 추가 적립하는 비적격 기여금은 비과세함
 - 적격 기여금의 연간 총한도(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는 25,000호주달러이며, 2013~14회계연도에 60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35,000호주달러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2014년 7월부터는 50세 이상인 근로자도 35,000호주달러 한도가 적용됨¹⁵⁶⁾
 - 한도를 초과하는 기여금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적격 기여금 한도초과부담금(excess concessional contributions charge)이 연 5.6%로 부과됨
 - 자영업자 등 일부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기여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함
- 비적격 기여금(Non-concessional (after-tax) contributions)은 세후소득에 대한 임의 적립금으로서 총 연간한도는 150,000호주달러이며, 한도초과 금액의 경우에는 46.5%로 과세됨(2014-15회계연도에는 47%로 과세됨)

156)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Individuals/Super/Other-contributions/>)

-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대신 불입하는 경우에는 비적격 기여금에 해당되지만, 배우자 퇴직연금세액공제(superannuation spouse contribution tax offset)를 적용받을 수 있음
 -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 비적격 기여금 불입액 한도는 3,000호주달러임

2) 운영수익 발생 단계

- 운영수익은 15%로 과세하지만, 60세 이후에 연금수령시에는 운영수익에 대하여 비과세함
 - 근로자가 비적격 기여금으로 퇴직연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15% (연금형 선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만 과세가 되므로, 일반적인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에 비해 큰 세제혜택을 받음¹⁵⁷⁾

3) 수령 단계

- 60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일시금)의 경우에는 모두 비과세함
 - 55~59세 사이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적격 기여금 부분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되, 15% 세액공제 가능함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175,000호주달러까지 비과세됨
 - 55세 미만일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적격 기여금 부분은 21.5%로 과세됨

157)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됨

〈표 Ⅲ-24〉 호주의 강제가입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제도

연령	연금	일시금
60세 이상	비과세	비과세
55~5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기여금: 소득세율 적용, 15% 세액공제 • 비적격 기여금-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기여금: 175,000달러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과세 • 비적격 기여금은 비과세
55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기여금: 21.5%로 과세 • 비적격 기여금은 비과세

자료: 호주 강제가입퇴직연금(<http://www.australiansuper.com/retirement/preparing-for-retirement/tax-on-pensions.aspx>)

노령층 연금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and Pensioner Tax Offset)는 연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임

○ 독신, 부부, 질병 등으로 별거중인 부부로 구분하여 세액공제한도와 면세점이 다름

〈표 Ⅲ-25〉 호주의 노령층 세액공제제도

(단위: 호주달러)

가구상태	면세점	공제가능 소득한도	세액공제한도 ¹⁾
독신	32,279	50,119	2,230
부부(동거)	57,948	83,580	1,602
부부(질병으로 인한 별거)	62,558	95,198	2,040

주: 1) 면세점 초과소득에 대해 1호주달러당 12.5센트씩 감소

자료: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Calculators-and-tools/Senior-Australians---pensioner-tax-offset>)

IV.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공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 우리나라, 미국, 독일, 호주는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조하는 공공사회부조가 있으며, 조세를 재원으로 충당함
- 우리나라, 미국, 독일은 사회보험에 기초한 공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된 재원으로 부과방식의 보험료이며, 호주는 100% 조세로 충당되는 노령연금과 강제가입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 독일의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전액 부담함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최대 월 398만원/연 4,776만원)의 9%, 미국은 소득(최대 연 117,000달러)의 12.4%, 독일은 소득(최대 연 71,400유로)의 18.9%임
- 우리나라, 미국, 독일의 공적연금 과세제도는 일반적으로 EET형(면세-면세-과세)으로 운영됨

1) 납입 단계 과세제도

- 우리나라, 미국, 독일은 납입 단계에서 사용자가 공적연금 제도에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연금 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됨

2) 운용수익 발생 단계 과세제도

-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과세하지 않고, 수령 단계로 이연하여 과세함

3) 수령 단계 과세제도

- 연금 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납입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함
 -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를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공적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종료됨
 - 미국은 공적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의해 수령액의 50% 또는 85%가 과세됨
 - 선택적으로 원천징수로 신고의무를 종료할 수 있음
 - 독일은 사적연금과 함께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나.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 우리나라, 미국, 독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는 일반적으로 EET형(면세-면세-과세)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호주는 TTE(과세-과세-면세)형으로 운영됨
 -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고 근로자 부담

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미국, 독일은 납입 단계에서 일정 한도에서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소득공제를 허용함

– 연금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 단계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EET형이라기보다는 EET와 TEE가 혼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호주는 납입 단계와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이 있음

–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도 저율의 세율로 부과하며 일정 연령 이상 연금 수령시에는 과세하지 않음

□ 우리나라, 미국, 독일, 호주의 4개국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본 결과, 퇴직연금제도의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제공함

○ 우리나라, 미국, 독일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 단계가 아닌 수령 단계로 과세가 이연되며, 근로자 본인 부담금의 경우에는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세제혜택으로 수령 단계로 과세이연함

○ 호주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납입 단계에서 기본세율이 아닌 저율의 세율로 부과하는 감세혜택이 있음

○ 우리나라, 미국, 독일, 호주의 경우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감세 또는 면세 혜택이 주어짐

○ 우리나라는 수령 단계시 세액공제와 일정 금액 한도에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함

1) 납입 단계 과세제도

□ 우리나라, 미국, 독일,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됨

○ 우리나라, 독일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지배적인 데 비하여, 호주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지배적임

□ 우리나라, 미국, 독일의 경우에는 납입 단계에서 사용자가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연금 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되고, 호주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 단계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15%의 저율로 과세됨

〈표 IV-1〉 납입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사용자)

구분	사용자 연금 부담금의 과세이연 한도 · 저율과세(15%) 한도			
	한국	미국	독일	호주
DB형 퇴직 연금	○ 기준책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 Min(①, ②) ① 3년 연속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기간의 평균 급여 100% ② 205,000달러	○ 한도 ① 직접계약, 지원금고: 노동계약 ② 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 공적연금 부담금 상한소득 (RV-BBG)의 4%+1,800유로	○ 통상임금의 9%, 1인당 25,000호주달러 ⁴⁾
DC형 퇴직 연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 ○ 퇴직연금규약에 근거한 경영성과급	○ 한도 ³⁾ Min(①, ②) ① 총급여 ¹⁾ 100% ② 52,000달러 ²⁾		
기타	-	○ 한도 1) SEP IRA Min(①, ②) ① 총급여 25% ② 52,000달러 2) SIMPLE IRA: 총급여 2~3%	-	-

주: 1) 총급여는 260,000달러(2014년 기준)을 한도로 함
 2)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7,500달러임
 3) 적립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통합한도임
 4) 60세 초과인 경우에는 35,000호주달러임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우리나라, 미국, 독일, 호주는 근로자의 추가적인 연금 적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 독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불입한 근로자 부담금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와 통합적으로 고려되며, 호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

도에 불입한 한도 내 근로자 부담금은 15%의 저율로 과세됨

- 우리나라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불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최고 4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 미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적으로 최대 17,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23,000달러)까지 연금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불입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계좌인 IRA에 불입한 최대 5,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500달러)의 연금 부담금과 통산하여 소득공제한도가 결정됨
 - 소득공제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신고방법,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예를 들어, 독신자로 수정 조정 총소득이 69,000달러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59,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함

〈표 IV-2〉 납입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근로자)

구분	근로자 부담금 적립, 세액공제(12%)한도, 소득공제한도, 저율과세(15%)한도			
	한국	미국	독일	호주
DB형 퇴직연금	○ 근로자 적립 불가	○ 근로자 적립 가능 ○ 소득공제 불가	○ 공적연금 부담금 상한소득 (RV-BBG)의 4%	○ 고용주 기여금 포함하여 25,000호주달러 ¹⁾
DC형 퇴직연금	○ 근로자 적립 가능: 연금저축계좌, IPR 통합하여 연 1,800만원 적립가능(IRP의 경우 1,200만원)	○ 근로자 적립 가능 ○ 17,500달러 (50세 이상 23,000달러)		
기타	○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통합하여 400만원	① SEP ○ 근로자 적립 불가 ② SIMPLE IRA ○ 12,000달러 (50세 이상 23,000달러)		
사용자 부담금	○ 근로소득 불포함	○ 근로소득 불포함	○ 근로소득 포함	○ 근로소득 포함

주: 1) 60세 초과인 경우에는 35,000호주달러임

- 독일은 사용자 연금 부담금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짐
 - 만일 사용자 연금 부담금이 공적연금 부담금 상한소득(RV-BBG)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호주는 고용주 의무적립금을 포함하여 최대 25,000호주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으며 15%의 저율로 과세됨
 - 세후소득으로는 150,000호주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음

2) 운용수익 발생 단계 과세제도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호주의 경우 15%의 세율로 과세함(60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표 IV-3〉 운용수익 발생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한국	미국	독일	호주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수익 비과세	15% 과세 ¹⁾

주: 1) 60세 이후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임

3) 수령 단계 과세제도

- 연금 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납입 단계에서 과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음
- 연금 급여 수령 단계에서도 국가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할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함

- 연금외수령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 비과세, 근속연수 공제(이하 퇴직소득공제), 연분연승법에 의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로 과세함¹⁵⁸⁾
- 미국은 근로자 순투자액에 해당하는 원금(cost) 산정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되며, 통상소득에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함
- 독일은 연금수령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일시금 수령시에는 자본소득으로 과세됨
 - 기타소득의 경우는 연금수령액의 68%를 과세하며 점진적으로 과세비율을 인상하여 2040년에는 100%를 과세할 예정임
 - 근로소득의 경우 수령액(최대 2,040유로)의 27.2%(2013년)를 소득공제하여 과세하며, 점진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비율을 인하여 2040년에는 수령액 전액을 과세함¹⁵⁹⁾
 - 자본소득의 경우 자본소득공제 연 801유로(기혼 1,602유로)의 적용 후 25% 세율로 과세됨
- 호주는 60세 이후에 연금(일시금) 수령시에는 비과세하며, 연령별로 적용되는 기준 세율이 다름
 - 55~59세 사이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적격 기여금 부분은 소득세율을 적용함

158) 단,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함

159) 63세 이상인 경우 612유로(2013년)의 추가공제가 적용됨

〈표 IV-4〉 수령 단계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구분	한국	미국	독일	호주
연금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¹⁾ - 분리과세연금소득 3~5%의 저율과세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cost)산출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 결정됨⁵⁾ ○ 통상소득에 합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 기타소득 공제 (한시적)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한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수령시 비과세 - 55~59세 수령시 적격 기여금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15% 세액공제
연금외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소득³⁾ - 퇴직소득공제⁴⁾ - 연분연승법 과세 ○ 기타소득 - 1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2년 이후 출생자 경우 수령시점, 적격연금제도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음 ○ 통상소득에 합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소득 - 자본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수령시 비과세 - 55~59세 수령시에는 적격 기여금부분은 175,000호주달러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로 과세

주: 1)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이고, 연령·수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연령, 지급방법 등에 따라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됨
 3)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 연금외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4) 퇴직소득공제에는 40% 비과세와 근속연수비례 소득공제가 포함됨
 5) 원금은 납입 단계에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적립금을 근로자의 근로자 순투자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함. 간편법, 일반법 등에 의하여 과세 제외 부분을 계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함

2. 시사점

-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사업비나, 운용비용의 절감 및 수익률에 대한 단체적인 협약 등을 통한 이점을 누릴 수 있음
 - 근로자는 개인연금저축, 개인생명보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이용할 수 있으나, 운용 회사의 사업비나 최저보장이율 등의 측면에서 개인별로 대응하게 되는 부담이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은 주요국에 비하여 아직도 낮은 수준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IV-5〉 주요국의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단위: %)

국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한국	18.8	12.2
미국	32.8	29.9
독일	32.2	24.7

주: 호주는 퇴직연금을 강제화하고 있어서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자료: 이용하·임병인(2013), 〈표 II-6〉 주요국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p. 62 재인용

가. 사용자 연금 부담금의 측면

- 특정 경영성과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음¹⁶⁰⁾
 - 단,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에 한하며, 그 재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금품이어야 함¹⁶¹⁾¹⁶²⁾
- 경영성과급의 사용자 연금 부담금 납입은 현금 수령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의한 연금자산 축적 재원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편중된 세제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납입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미국의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s)와 유사하며, 이익분배제도의 경우

16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90, 2013. 8. 30.
 단, 사전에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 비율 등을 정하여야 함

161) 이때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에서 정의하는 임금을 말함.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162)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에도 사용자 부담금의 적립한도를 총급여와 52,000 달러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

나.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측면

-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의한 연금 부담금 납입이 허용됨
- 이는 근로자 연금 부담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401(k)제도나 독일의 임금전환제도와 유사함
 - 두 제도는 매월 급여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형식으로 하여 근로자 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며, 일정한도의 과세이연 세제혜택을 부여함
 - 단, 미국이나 독일은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만일 401(k)나 임금전환제도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연금 부담금을 납입토록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임금 수급권 보장이 선행되고, 현행 과세이연 한도의 확대가 요구됨
- 그러나 연금계좌 과세이연 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에 대한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없음
 - 근로자 연금 부담금은 연금계좌 통합한도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통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음
- 과세이연 한도가 현행과 같이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면 근로자 연금 부담금의 추가 납입을 위하여 미국 Roth 401(k)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는 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 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연금 급여의 수령 단계에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임
 - Roth 401(k)는 운용수익 발생 단계에서의 투자수익을 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과거 우리나라 비과세 장기저축상품과 유사함

- 수령 단계시 연금수령의 강제화 및 수령 개시연령을 정하여 도입하는 경우 연금자산 축적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호주의 경우, 세후소득으로 납입하고 60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 발생 단계의 투자이익을 비과세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근로자 연금 부담금 납입한도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연금 부담금 납입한도 확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소득월액 상한수준은 월 398만원으로 가처분소득에 여유가 있는 근로자의 추가 납입에 한계가 있음
 - 소득월액 상한수준 상향조정을 통한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대가 필요함
 - 주요국인 미국과 독일의 연간소득 상한수준은 각각 117,000달러, 71,400유로임

- 호주는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호주의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의 납입한도는 세제혜택이 있는 저율로 과세되는 적격 기여금은 25,000호주달러이지만, 60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35,000호주달러임 (2014년 7월부터는 50세 이상인 근로자도 35,000호주달러 한도가 적용됨)
 -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안정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50세 이상부터는 세제혜택이 있는 기여금 한도를 10,000호주달러(약 9,850만원) 상향조정한 것임
 - 비적격 기여금은 세후소득에 대한 임의적립금 형태로 연간한도는 150,000호주달러이며, 배우자의 비적격 기여금도 3,000호주달러까지 대신 불입할 수 있음

〈표 IV-6〉 국가별 공적연금과 강제적 퇴직연금제도의 보험료율 및 상한소득금액

국가 ²⁾	보험료율	상한소득
우리나라	9%	월: 398만원(연간 4,776만원)
미국	12.4%	연간: 117,000달러(≒1억 2천5백만원) ¹⁾
독일	18.9%	연간: 71,400유로(≒1억 660만원)
호주	9.25%	연간: 적격 기여금 25,000호주달러(≒2천5백만원) 연간: 비적격 기여금 150,000호주달러(1억 4천8백만원)

주: 1) 환율은 2014년 3월 고시환율

2) 우리나라, 미국, 독일은 공적연금이며, 호주는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의 보험료율 및 상한소득금액임

다. IRP제도의 활용을 통한 연금자산 축적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근로자는 IRP계정을 설정하고 현실적인 퇴직 이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의한 연금 부담금의 불입이 가능하여 노후재원 마련이 가능함¹⁶³⁾
-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금수령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이 있으나, IRP계정은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단, 개시 수급연령 55세 이상, 수령기간 5년 이상의 요건은 모두 해당됨
- 따라서,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IRP 계좌에 추가적으로 연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적립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음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는 현실적인 퇴직 이전에는 IRP계정의 설정 및 추가 불입이 허용되지 않음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허용됨

163)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도입됨

- 이에 IRP계정의 설정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 실시하여 근로자 본인의 추가적인 연금 부담금 납입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의 재원수단을 조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실적은 전체 사업장 160만개 중 14.1%에 불과함
 - 그중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8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4%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장의 약 96%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2.7%에 불과함¹⁶⁴⁾
- 만일 IRP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마련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

라. 공적연금 부담금 보조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

- 일반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적용, 그리고 개인적인 금융상품 투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연금자산을 축적할 수 있음
 - 그러나 가처분소득에서 연금자산 축적의 여력이 미비한 저소득층의 경우 사전적인 노후대책 마련이 불가능함
- 현행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소득 축적에 효과적일 수 있음
 - 국민연금은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 및 농어업인을 위하여 2012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50% 지원함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된 농·어업인에게 본인 보험료의 50%

164) 김재현 외(2013), p. 56.

(2012년 기준 소득월액 최대 7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함

-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와 최근 도입을 추진중인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등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정보의 확보를 통한 보험료지원 대상의 확대와 지역가입자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만일 국민연금제도가 아닌 사적연금제도에서의 연금 부담금 보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으로 하여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연금 수령, 가입기간, 일정 연령 이후 개시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 예로 호주는 2003년부터 저소득층의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활성화하는 정부지원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 co-contribution)를 시행하고 있음
 - 저율과세의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 기여금((Non-concessional (after-tax) contributions)을 불입하는 자에게 최대 500호주달러(불입액의 50%)까지 정부가 추가 납입해 주는 제도임
 -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호주의 공적연금제도를 대체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책임

- 최근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연금 부담금을 보조하자는 논의¹⁶⁵⁾가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 리스터연금제도에 대한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리스터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 지배적이라는 최근 조사결과가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¹⁶⁶⁾
 - 이는 저소득층이 리스터연금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비록 알고 있었더라도

165) 「개인연금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파이낸셜 뉴스 2014년 1월 16일자, 2014년 3월 26일 방문) : 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201401170100173300008916&cDateYear=2014&cDateMonth=01&cDateDay=16

1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p. 209, 국민연금연구원(2012), p. 224

저소득층의 연금계약 유지가 어렵기 때문임

- 도입 당시 연금수령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나, 제도의 이용이 저조하자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자산 축적의 방안으로 효과가 저하됨

참고문헌

- 권혁창·김평강,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2013.
- 국민연금연구원, 『해외 공·사연금제도 III〈아시아·태평양〉』, 2013a.
- _____, 『해외 공·사연금제도〈아메리카〉』, 2013b.
- _____, 『해외 공·사연금제도 I〈유럽〉』, 용역보고서 2012-03. 2012.
- 금융투자협회,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2.
- 김대환·류건식,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비교 및 개선과제」,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2013.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보험연구원, 2011.
- 김재현·김대환·박지순·성주호·신성환, 『퇴직급여제도 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고용노동부, 2013.
- 김영미,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현안분석 2012-02』, 한국법제연구원, 2012a.
- 김영미, 「독일의 기업연금제도와 그 시사점」, 『노동법논총』, Vol. 24, No.(2012),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b.
- 윤석명 외 20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12.
- 이상윤, 「세계측면에서 본 미국의 사적연금제도(상)」,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1.
- 이용하·임병인,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써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3.
- 이태호·김원식·김재현·신성환, 『퇴직연금 단일화 필요성 및 효과와 주요 해외사례연

- 구』, 용역보고서, 한국채권연구원·고용노동부, 2011.
- 이해인·임병인,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써 개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발전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3.
- 최성민, 「주요국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3.
- 홍범교·송은주·박수진,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01,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
- 호주 복지부(<http://www.humanservices.gov.au/>)
- 호주 통계청(<http://www.abs.gov.au/>)
- 호주 퇴직연금가이드(<http://www.superguide.com.au/>)
- OECD, *OECD at a Glance 2013*, 2013.
- _____, *Pensions at a Glance 2013 highlights-Korea*, 2013.
- IRS, 「Publication 575 Pension and Annuity Income for Use in Preparing 2012. Return, 2013.
- _____, 「Publication 560 Retirement Plans for Small Business For Using in Preparing 2012 Returns, 2013.
- _____, 「Publication 17, Tax Guide 2012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 2013.
- _____, 「Publication 915, Social Security and equivalent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2013, 2013.
- Federal Ministry of Finance, 『An ABC of Taxes 2011 Edition』, 2012.
- Perdelwitz, Andreas, *Germany Individual Taxation*, IBFD, 2013.
- PWC, *Germany Individual-Taxes on Personal Income*, 2014.
- Röβler, Nicolas, *The German Pension System*, Mayer Brown, 2009.

세법연구 13-07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홍범교 · 박수진 · 정경화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706-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